

인권정보자료실

Mj1.3

第 7次 Workshop

**Globalization & Human Rights:
The Legal Status of Chinese Minorities in Korea**

세계화와 인권: 화교의 법적 지위 향상

主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韓中日報

主管: SEOUL中國學中心

後援: 韓中日報, 韓中法學會, 國際人權法學會,
新社會共同善運動聯合, 漢城中國城開推進委員會

Mj1.3

第 7次 Workshop

**Globalization & Human Rights:
The Legal Status of Chinese Minorities in Korea**

세계화와 인권: 화교의 법적 지위 향상

主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韓中日報

主管: SEOUL中國學中心

後援: 韓中日報, 韓中法學會, 國際人權法學會,
新社會共同善運動聯合, 漢城中國城開推進委員會

인사말

유국홍
한성화교협회장

지리적으로 이웃하고 있는 중한 양국은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고, 특히 1882년 9월 ‘중국조선상민수륙무역장정(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 조약 체결 이후 중국 연해 일대(산동, 강절 등지) 상인들이 속속 한반도에 도래하여, 당시 인천, 서울, 부산, 원산, 평양 등지의 대도시지역에서 상업에 종사한 화교의 수는 30만 명을 상회했다. 이런 상황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이후 변화하기 시작해 화교의 수는 부단히 감소했고, 6.25전쟁의 발발로 인해 4만명 정도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전쟁 종결 후 약간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던 화교의 수는 1970년대 들어 정부의 박해로 인해 미국, 대만 등지로 이주하면서 현재는 불과 2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화교의 선조들이 ‘중국조선상민수륙무역장정’의 체결 이후 한반도에 정착하기 시작한 지 100여 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그들의 3~4대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을 제 2의 고향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들은 병역을 면제받는 것을 제외하면 기타 각종 세금을(예를 들어 주민세, 교육세) 모두 법에 의거해 납부해 왔다. 이는 의무는 완전히 다하고 있는 반면 응분의 권리인 향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표시한다.

근래 들어 한국은 다방면의 개혁을 통해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들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혁의 일환으로 우리 한국화교들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예와 같이 한국화교들에게 영주권의 자격이 부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즉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F2 비자를 영주거류권으로 대체해 한국 국민의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대우를 기대한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화교들을 대표해 화교의 권익을 신장시키는데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여러분의 모두 뜻하는 바대로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大會開始

劉國興
漢城華僑協會長

中韓兩地相鄰，自古以來關係密切，尤其是在1882年9月兩國簽定“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以後，中國沿海一帶(山東、江浙等地)商人紛紛來韓經商，據估計當時來韓在仁川、漢城、釜山、元山、平壤等大都市經商的華僑多達30多萬人，後因受日本帝國主義的迫害，華僑人數不斷減少，迨至6.25韓戰爆發，華僑人口僅剩下4萬人左右，70年代，華僑因受當時軍政的影響，華僑大舉移民美國、返臺灣定居，幾年以後，旅韓華僑人數僅剩下2萬餘人。

旅韓華僑的祖先，多係百年前依據中韓兩國簽定之“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以後，而從中國東渡來到韓國，具有超過百年以上的歷史，現在的華僑在韓國居住已有三、四代以久，已把韓國視為“第二故鄉”，在韓國居住的華僑除了不被徵兵以外，其他各項稅金(如住民稅、教育稅)都是依法照納。其義務完全盡到，而得不到應得的權利。

近幾年來，韓國力圖革新，已步上先進國家的行列，政府極應比照美國、德國等先進國家的範例，也給予旅韓華僑以永住權的資格。(即將現行之5年延期1次的F2資格應改為永久居留權與韓國國民持有國內住民登錄證一樣之待遇)

本人在這裡代表旅韓華僑感謝在座的各位為了華僑爭取權益與即得權的各位先生和女士們，最後並祝各位身體健康，萬事如意，感謝大家。

인사말

변호사 홍성우
차이나타운건립추진위 자문위원

오랫동안 한국의 識者들간에 심각하게 논의되어 오던 華僑에 대한 法的地位向上의 문제가 점차 국민여론의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고 이제 한중일보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주최자가 되어 이 뜻깊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만시지탄이 있으면서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그간의 華교에 대한 법적·제도적·사회적 차별은 우리 한국인의 큰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에는 분개하면서도 우리 한국내의 華교들에 대하여는 그보다 더한 차별을 아무런 반성도 없이 행하여 왔다는 것은 무슨 말로도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華교문제를 「일시적으로 이 나라에 와서 살게된 타민족」이라고 인식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땅을 자신들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안주하며 뿌리내리고 살기를 원하는 민족공동체의 일부로서의 소수 민족인 것이며, 대한민국과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운명체의 구성원들로서의 지위가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화교들에 대한 차별의 개선, 철폐는 사실은 화교들을 위한 것이기에 앞서 우리한국, 한국인 스스로를 위한 일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화 시대에 이 작은 국토안에서의 편협한 소수 민족 차별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관련해서도 잊는 것만 있을 뿐 아무런 득도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몇몇 뜻있는 국내인사와 華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차이나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華교에 대한 차별 철폐 문제를 활발히 제기하는 이 운동은 반드시 보람있는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이 토론회를 준비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寒 喧 詞

洪 性 宇 律師
中國城建立促進委員會諮詢委員

韓國有識之士長期來一直鄭重議論的關於提高華僑的法律地位問題，在韓國輿論中間逐漸擴大了共鳴隊伍；現在由韓中日報和民辯（爭取民主社會律師會）主持舉行這次意義深刻的研討會，雖然為時已晚，但是我認為這是一件真正值得欣幸的事。

一句話，過去對華僑在法律上、制度上、社會上的歧視，是我們韓國人的很大恥辱。我們對日本政府歧視旅日僑胞感到憤慨，而對在我們韓國國內的華僑受到比他們更嚴重的歧視卻一直沒有任何反省，這是無論用什麼語言也不能為之辯解的。

從根本上說，將華僑問題看作是“暫時來本國生活的其它民族”本身，是錯誤的。他們是本人及其子女世世代代居住在這塊土地上並且願意生根生活下去的民族共同體的一員---少數民族，應當給他們以與大韓民國同命運的共同命運體的組成成員的地位。

改善、消除對華僑的歧視，事實上比為了華僑更重要的是為了我們韓國和韓國人自己。在今天這樣全球化的時代，在這塊小小國土上出現這種狹窄的對少數民族的歧視，從政治上看，或者從經濟上看，只會喪失韓國在國際社會上的威望，而不可能得到任何東西。

我深信，目前以幾位有志的國內人士和華僑領導人為中心促進中國城的建設和活躍地提出消除歧視華僑問題的這一運動，一定會結出豐碩的成果。謝謝準備這次研討會的各位先生。

目 次

1. 한국 화교의 과거·현재 및 미래: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맞이하여 韓國華僑的，現在和未來：迎接充滿希望的新時代	1
2. 한국화교의 현황: 경험적 사례를 중심으로 韓國華僑的現況：為主經驗事例	37
3. <토론요지> 한화의 법적 지위 개선으로 한중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열자 以改善韓華的法律地位開創韓中關係的新時代	41
4. 화교의 비자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영주권 제도 도입의 가능성 關於國內華僑的簽証問題的提案：導入永住權制度的可行性	47
5. <토론요지> 한국 화교의 법적 지위 개선은 한국사회를 위한 길 改善韓華的法定地位，打開韓中關係的新世界	71
6. <토론요지> 한국 화교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제언 韓國華僑的法律地位向上	73
7. <부록> 화교의 법적지위 <附錄> 華僑的法律地位	79

한국 화교의 어제, 오늘 및 내일: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맞이하여

양 필승

건국대학교 교수

한국화교, 즉 한화(韓華)의 역사는 대체로 여섯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9세기 후반부터 1910년 한일합병 전후까지 한화의 정착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1931년 만주의 만보산(萬寶山)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빠른 속도로 발전했으나, 이후 1950년 6.25 전란이 발생하기까지 혼란기를, 이어 1970년대 중반까지 정체기를 경험하다, 비록 1997년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이하기 즈음에까지 쇠퇴를 거듭했지만, 오늘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한화의 정체성

한국, 즉 남한에 사는 화교의 조상들은 대부분 중국의 산동성에서 건너왔으나 현재 대부분 국적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닌 중화민국, 즉 타이완에 있다. 전체적인 인구도 계속 감소추세 하에 있어, 현재 약 2만 명이 약간 안되지만, 뚜렷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한 채, 한국에서 유일한 소수민족으로 굳건히 자리잡고 있다.

우선 화교의 정의부터 상당히 복잡하다. 현재 중국 정부에서 취하는 입장은 화인(華人: ethnic Chinese)과 화교(華僑: Chinese sojourners)를 나누는 것이다. 전자는 부계주의 관점에서 부계의 조상이 중국민족으로서 현지의 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국적을 지니지 않은 집단을 지칭하며, 후자는 현지의 국적 대신 중국의 국적을 유지한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학계에서는 위와 같은 구분에 화예(華裔)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위의 화인 카테고리 중에서 자신을 현지 교민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하지 않으면서 단지 문화적으로 자신들의 부계 조상이 중국으로부터 건너왔다고 생각하는 집단으로 다시 세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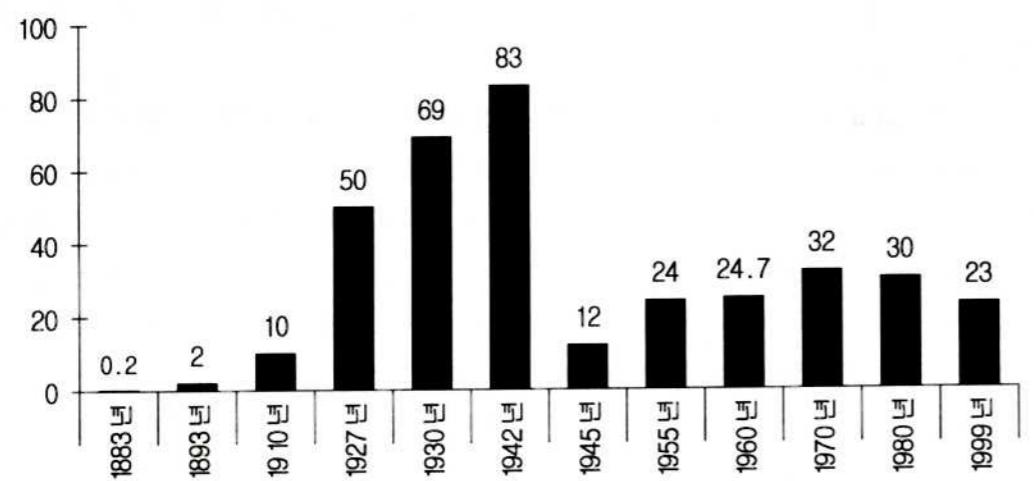
한화는 “현재로서” 위의 세 분류 중 화인과 화교로만 구성되어 있다. 한국과 중국과의 특별한 역사적 관계로 말미암아, 이른바 “화예”의 존

재는 주, 객관적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주1). 현재 한국이나 중국 모두가부장적인 부계 혈통주의를 국적법의 기초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국적화인의 통계는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 설상가상으로, 양국의 국민들 역시 한화나 중국 내 조선족을 서로 자신의 국민 내지 민족으로 주관적 관점에서 인식하기 때문에, 최근에 귀화한 화인을 제외하고, 그들에 관한 파악은 용이하지 않다(주 2).

최근의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화의 숫자는 23,282명 가량으로, 실제 국내에 거주하는 숫자는 그보다 작은 18,000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통계상의 차이는 한국 법무부 발행의 외국인 등록증(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을 소지하면서도 유학 등의 이유로 실제 생활은 해외에서 영위하는 숫자가 상당하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다(영남일보, 1999년 10월 11일, 10월 15일).

아래의 그림은 한화의 증감을 나타내는 그래프로서 한화의 역사를 시대 구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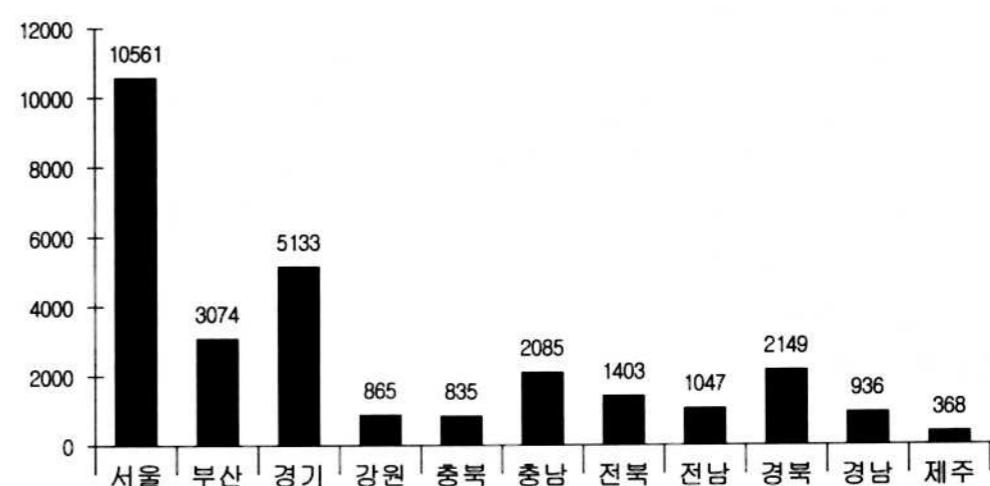
그림 1. 한화의 시기별 인구증감 (단위: 천명)



출처: 潘鈞 主編, <<海外華人百科全書>> 三聯書店(香港)有限公司(1998) p.342;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 체류심사과 자료.

지역별로는 서울에 압도적인 숫자가 모여 살고 있다(그림 2). 정착 초기에 인천이 서울보다 화교의 숫자가 많았지만, 이후 줄곧 서울에 화교 인구가 집중되어 왔다. 이는 두말 할 것이 없이, 한국의 정치, 경제가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동시에 화교사회에서는 상업 등 도시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에서 화교를 초대하여 감사를 표했다는 보도가 있었던 바, 북한의 화교 숫자는 1만 명 내외인 것으로 추측된다(동아일보, 2000년 7월 1일). 해방 전에는 북한의 화교가 남한보다 많았다는 사실은 육로를 통한 이민 경로가 가능하다는 한반도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이다.

그림 2. 한화의 지역적 분포(1982년)



참조: 1999년 한화의 주요 거주지역은 서울(8,000명), 인천(3,300명), 부산(2,500명), 대구(1,800명) 등이다.

출처: 주한 중국 영사관 자료, 영남일보 1999년 10월 15일.

한화사회는 압도적으로 산동 출신으로 이루어졌다. 1983년 주한 대만대사관의 통계에 의하면, 94.6%가 산동 출신으로, 특히 해외 화인사회의 주류를 형성하는 꾸양뚱 출신은 1,000명 중 한 사람꼴에 그친다. 산동 출신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까닭은 물론 한반도에 대한 지리적인 접근

이 용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화의 대규모 이민이 이루어진 20세기 상반기의 산동이 처한 사회경제적인 환경으로부터 비롯됐다. 소농경제가 몰락의 위기에 처하자 계절이민을 통해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산동의 몰락 농민들은 육로로 만주지방이나 해로로 한국과 일본으로 향했던 것이다. 가족단위의 집단 이민 대신, 주로 가장이나 아들을 중심으로 개별적이며 한시적인 이주를 선호했다. 그 결과, 초기부터 남자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이었을 뿐 아니라, 한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자연스럽게 대량으로 이루어졌다.

유교사회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중국인 남자와 현지의 한국인 여자가 결혼하는 경우 화교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위는 변함이 없으며, 한국의 국적법은 그 같은 현상을 더욱 강화시켰다. 즉 우리 국적법의 부계주의 때문에, 한국 남자와 중국인 여자가 혼인을 성사시켰을 때, 신부의 국적 취득은 용이할 뿐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성립되지 않는다. 실제로 화교 사회에서도 한국인 남자에게 시집가는 경우는 매우 경원하면서도, 한국인 신부를 맞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용적이며, 그 같은 사례는 대단히 보편적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남녀 인구의 성비도 극심한 불균형을 이룬다. 무엇보다도 타이완이나 기타 다른 나라도 출국을 선호하고 귀국을 원하지 않은 화교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야기된 현상이다. 분명 한국사회에서 화교에 대한 불평등은 동양사회의 뿌리깊은 남녀차별 의식과도 관련이 깊다.

한화의 절대 다수가 산동 출신이라는 사실은 국제 화교사회에서 한화의 소외를 설명하는 요인 중 하나다. 무엇보다도 주류를 이루는 꾸앙뚱 등 남부 출신 화교와 한화가 느끼는 언어상의 이질감은 마치 영어와 독일어를 말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같다. 전세계 화인 네트워크가 교역이라는 실용적인 종족성(ethnicity)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관점에서 볼 때, 언어상의 피리는 한화사회의 침체와 고립을 동시에 설명해 주고 있다.

한화의 종족성은 같은 지역 출신으로서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동질성을 대체로 잘 유지되고 있고, 특히 폐쇄적인 결혼 습관을 유지함으로써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다른 소수민족 사회처럼, 종교가 한화의 결집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못하다. 다수의 화교가 자신을 불교 신자라고 여기지만, 실제로 절에서 불공을 드리는 수는 극히 적다.

기독교는 전체 신자에 비해 교회의 수가 많지만, 이는 매주 예배를 중시하는 기독교의 규칙과 한국 사회에서의 기독교 교세 때문으로 보인다 (박은경, 1986: 177). 대체로 전체 화교 사회를 결속시키는 주도적인 종교나 종교 단체는 존재하지 않은 것 같다.

종교 대신 이데올로기가 지금까지 한화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했지만, 급속히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다. 6.25 전란 중에는 200여명 이상이 참전하여, 조상의 군대인 중공군을 대상으로 거의 전몰에 가까운 희생적인 전투를 벌리는 등, 적극적으로 반공대열에 참여했으며, 이는 당시 한반도 상황에서 스스로 조상의 나라인 중국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나라인 대한민국을 자신의 국가로서 선택한 결과였던 것이다. 이후 강력한 반공 이데올로기가 한화 사회의 구심점으로 작용했으며, 특히 타이완 국적을 보지함으로써 이데올로기는 한화사회를 결속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하고, 한중 사이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상당수의 화교가 대중교류를 통해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특히 대륙으로부터 밀려드는 유학생, 상사 주재원 등 신이민의 대두로 그들과의 접촉이 빈번해짐에 따라, 이데올로기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급속히 상실해 가고 있다. 아울러 자신들의 원적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산동이기 때문에, 점증하는 고향방문이나 대중 투자로 말미암아 반공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표방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에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최근 타이완에서 국민당의 장기집권이 종지부를 찍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데올로기는 한화사회를 결속시키는 역할보다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외부인의 시각에서는 한화사회의 단결력이 강한 듯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화교협회 등 기관들의 조직력과 기능이 급속히 쇠퇴하고, 전통적인 분파주의가 아직은 잔존함으로써 결속력의 쇠퇴와 지도력의 취약은 한층 심화되고 있다. 기실 분파주의는 한화의 이주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역사적 산물로서, 노동자 이민이나 상업조직 등이 이른바 방(幫)을 통해 조직화됐던 배경에서 비롯됐다. 이른바 “꿀리”(苦力)이라 불리는 중국인 이민 노동자인 경우, 파두(把頭)라는 우두머리 밑에 10-20명의 “꿀리”가 공동숙식 등 상호 긴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조직화됐던 것이다 (박은경, 1986: 89-93). 이 같은 “방”이라는 조직은 현재 그 형태 자체는 사라졌지만, 분파주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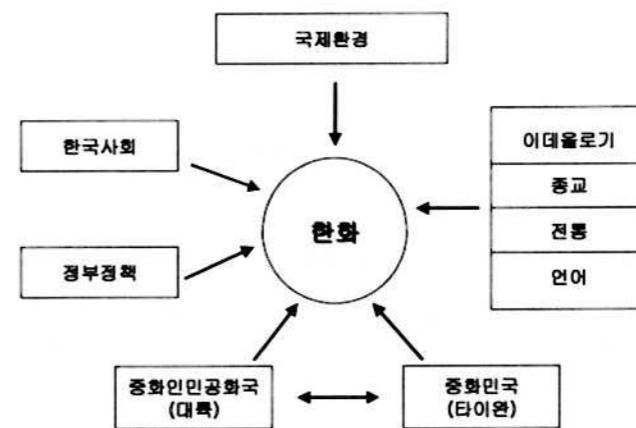
역사적 뿌리로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아직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조직적인 측면에서, 한화사회의 결속력을 그린대로 유지시키는 기관은 학교학교라 볼 수 있다. 1902년 인천에서 최초로 설립된 이래, 학교학교는 1998년 현재, 28개 초등학교, 4개의 중고등학교에 모두 3,125명이 다니고 있다 (Choi, 2000: 8; 우심화, 1999: 112). 학교의 선후배 관계를 통해, 학교사회는 인적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의 교과과정을 통해 전통에 대한 학습을 계속하고 있다. 기실 반공 이데올로기도 학교학교를 통해 강화됐으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내외적인 환경변화는 이데올로기 교육에 상당히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추측된다.

언어, 전통, 이데올로기, 및 종교 등의 각 요소가 차지하는 요소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다르지만, 한화는 나름대로의 종족의 정체성, 즉 종족성(ethnicity)을 유지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비록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학교 등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여, 정체성과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언어, 전통, 이데올로기 및 종교와 같은 내부적인 요소를 통해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살펴 보았다면, 국제환경, 한국사회와 정부정책과의 관계, 그리고 타이완과 대륙과의 관계 등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어떻게 종족성 유지와 한화사회의 역량이 변화했는지 시기에 따라 살펴 보고자 한다.

아래의 그림은 외부적 요소와 내부적 요소의 상관관계를 그림을 통해 도식화한 것이다. 국제환경이란 국경을 초월한(cross-border) 한화의 위상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 제국주의나 냉전체제와 같은 요소 따위를 지칭한다. 한국 사회란 학교들의 일상 생활이 이루어지며 그가 일부로서 속한 현지 사회라는 큰 틀을 지칭한다. 정부정책이란 한화의 출현이란 결국 국민국가(nation-state)의 형성이란 역사적 과정에서 비롯된 산물이기 때문에, 교육제도, 경제 정책이나 국적법 등에 좌우되기에 매우 중요한 외부적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대륙과 타이완은 학교의 출신국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설정된 요소이다. 국제환경이란 요소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시에, 대륙과 대만의 양안관계, 즉 중국의 현실적 분단관계는 유태인과 같은 다른 이민사회(diaspora)와 그들의 조상나라와의 관계보다 훨씬 복잡한 관계에 한화를 처하게 했다.

그림 3. 한화사회의 변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정착기 (1880년대 초반-1900년대 말)

임오군란(1882년)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몰려오기 시작한 중국인 이민은 초반기 본국정부인 청조정의 영향력에 힘입어 화인들은 한반도에서 자체적인 상권 세력을 형성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청일전쟁에서의 패배로 청조의 정치적 지배력이 감소됐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와는 경제적 분업을 전제로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오히려 쇠퇴하는 조선왕조가 규제보다는 방임하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한화사회는 성공적인 정착을 이루었다.

앞서 지적했듯이, 한반도로의 중국인 이주는 고조선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동양문화라는 큰 틀에서 오히려 중국인 이민은 한반도의 문화에서 동화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고,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화예라는 개념은 아예 찾아보기 힘들다. 오늘날의 한화는 결국 19세기 후반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나라 군대가 한반도로 진주함으로써 함께 몰려온 일단의 상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그 기원을 추적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임오군란 직후, 청과 조선은 이른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을 체결하고, 중국인이 개항장에서 토지와 가옥을 소유, 임차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 이 같은 법률적인 보호망을 확보한 중국인들

은 인천을 거쳐 항해로, 신의주를 통해 육상으로, 청에서 일본을 통해 다시 한반도로 재이주하는 경로로 각각 밀어 닦쳤다. 특히 일본과의 경쟁을 의식한 청조는 의도적으로 중국인의 대한 이민을 부축이었다.

비록 청일전쟁(1895년)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감소했지만, 열강의 침탈 속에서 조선정부의 위상은 새삼 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취약했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도록 이끌었고, 화교들의 위상은 다른 외국인과 함께 오히려 우월적인 지위를 누렸다. 특히 화상들의 경제적 지위가 위협 받을 때, 직접 영사관이 나서서 보호하는 정도였다. 또한 편법적이지만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가능했다. 이때 화인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규제는 이미 법적으로 가능했지만, 우리 정부의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전혀 실효가 없었다.

한국 사회와의 관계는 사소한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전통적으로 사농공상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 사회는 화상과 견줄 만한 경쟁적 위치에 서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외교역을 장악한 화상의 역할을 오히려 필요로 했다. 비록 소매는 우리 상인이 담당하더라도, 도매나 무역은 화상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분업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화교와 우리 사회가 직접 충돌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19세기 말 이래 급속히 성장하는 화교사회는 한일합병 이전에 이미 1만 명 수준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본국정부인 청조가 초기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청일전쟁 이후에는 급속히 상실했지만 외국인으로서 화교의 지위는 그런대로 확고했다. 우리 정부의 법적 권위는 전혀 미치지 못했으며, 단지 경제적 분업관계로 우리 사회와 한화 사회는 공존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로써, 화교사회는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발전기 (1910년대 초반-1920년대 말)

청조가 무너지고 정치적 혼란이 가속되는 가운데, 중국으로부터 이민은 끊이지 않고 계속됐다. 그러나 일본이 마침내 한국을 합병하자, 강력한 규제가 가해지기 시작했지만, 피압박 민족이란 공통성 때문에 한국 사회와 화교 사회는 그런 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1911년의 신해혁명으로 이천년의 전제정치가 몰락하자, 중국은 정치적 혼란에 빠졌다. 특히 군벌정치가 등장하면서, 농민에 대한 경제적 수탈은 더욱 심화되고, 많은 농민들은 새로운 땅과 일을 찾아 고향을 떠났다. 자연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반도로 이주하는 중국인의 수가 급증하기에 이르렀다. 이때는 북한에 화교인구가 편중되어, 1920년에 52.4%, 1934년에 64.4%, 그리고 1942년에 82.8%까지 유팔했다 (박, 75). 한편 화교는 도시뿐 아니라 농촌 지역에까지도 밀고 들어가, 직업분포가 더욱 다양해졌다.

이 같은 화교인구의 증가에 두려움을 느낀 일제는 일방적인 규제정책을 펼쳤다. 우선 주거지를 제한하고, 화교들이 강세를 보이던 무역부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 동시에 일부 한화들이 항일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자, 한국인과 심리적인 이간정책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1927년부터 화교 배척운동을 본격적으로 조작했다.

이 시기에는 한국 사회와의 갈등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중국, 특히 산동의 경제불안은 대량이민을 촉발시켰고 대다수가 농민이었던 화교들은 한국 노동자의 직업을 빼앗아 갔다. 특히 북쪽의 신공업지대에서 한국인과 화교 꿀리는 치열한 경쟁을 펼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화교의 이민은 본격적인 정주(定住) 이민이라기보다 계절적인 한시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갈등은 제한적일 수 있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항일로 서로 연대할 수 있었고, 특히 무역 등 대단위 상업에서 일본인을 누르고 독자적인 상권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었던 화상들에 대해서 한국사회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지녔다.

국제환경은 중국 화북지방에서 발생하는 유민을 막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특히 산동과 한반도의 중간에 있는 만주지역은 우리 한민족의 이민과 산동 등지의 화북지역에서 몰려오는 중국인 이주민과 뒤섞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일본은 체계적인 침략은 변경지역으로서 만주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이 거의 사라질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이 같은 배경에서 중조(中朝)의 국경은 사실상 뚫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중국 이민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다. 그리하여 만보산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1930년에는 한화의 인구가 7만 여명에까지 달했다 (박, 71-2).

당시 조선에서 최고 납세자가 화상일 정도로, 한화사회는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 이미 화교에 대한 배척운동이 1927년부터 일기 시작했지만,

아직 한국 사회와의 관계는 무난했다. 그러나 노동자 계층에서 대립과 갈등은 점차 위험수위로 접근하기에 이르렀다. 일제는 화교와 조선인이 연대하기를 두려워 했기 때문에 심리적 이간정책을 펼쳤을 뿐 아니라, 화교의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각종 정책을 실시했지만, 한화의 사회경제적 위상은 크게 위협 받지 않았다.

혼란기 (1930년대 초반-1940년대 말)

실제로는 일제의 이간정책의 산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31년의 만보산 사건을 계기로 한국사회와 한화는 갈등관계로 돌입했다. 일제는 더욱 노골적인 통제정책을 실시했고,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으로 이어지는 국제관계의 악화는 한화의 위상을 한층 어렵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는 끈질긴 생명력을 과시했다.

만주에서 조선인 이주민과 중국인과의 충돌을 의도적으로 과대포장함으로써 배화감정을 촉발시켜, 무려 700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대규모의 학살이 한반도에서 발생했다. 한화 중 현재의 생존 노인 한 사람은 당시를 회고하면, 오줌이 재리다고 할 정도로 화교사회에 미친 영향은 가히 파괴적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화 인구는 무려 40%나 감소했다. 당시 관제어용 언론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이간전략을 계획했던 총독부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던 셈이다.

중일전쟁의 발생으로 국제환경이 악화되자, 한화의 인구는 다시 감소 됐으나, 1942년 약 8만 명으로까지 늘었다. 이는 본격적인 일본의 침략을 피해 이주하는 중국인의 이주물결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되자, 중조 간의 이민대열도 끊기고 마침내 전쟁이 끝날 무렵인 1945년에는 한화의 인구는 고작 12,648명에 그쳤다.

이 시기는 양적으로 부침이 심한 시기였다. 전후 다시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6.25 전란이 발생하기 직전에는 18,000 명 수준에까지 늘어 났다. 이러한 인구 증가현상은 중국 대륙에서의 국공 내전발생과 한국에서의 정치 혼란으로 말미암아 정부의 통제정책이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함으로써 야기됐다.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상으로서 화상의 능력은 여전히 충분히 발휘될 수 있었다. 특히 한중무역이 한국의 전체 교역에 80-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한화의 경제적 지위는 크게 신장되지 않을 수 없었다.

혼란기에 한국사회와 한화는 갈등의 관계로 돌입했다. 정부정책은 일제 강점기에는 규제 일변의 정책으로, 해방 후 과도기에는 무정부적 방임 상태에서, 한화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침을 거듭했고, 이는 인구의 증감으로 여실히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제환경은 대체로 꾸준한 이민집단의 조성에 긍정적이었으며, 단지 중일간의 적대관계로 말미암아 이입에 대해서는 간헐적인 차단이 있었다.

정체기 (1950년대 초반-1970년 초반)

한반도에서의 내전 발생과 중공군의 참전은 외부로부터 신규 이입을 가로 막았다. 한화는 단순히 자연 증가 만을 경험했을 뿐, 양안관계의 대립은 질적 성장을 가로 막았다. 정부정책은 화교의 지위를 한층 약화시켰으며, 한국사회는 이들에 대해 대체로 무관심했다.

세계가 본격적으로 냉전체제로 돌입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던 6.25 전쟁은 한화사회를 정체기로 이끌었다. 그러나 1976년 32,436명을 정점으로 인구는 꾸준히 늘었다. 이는 자연증가로 설명될 수 있으며, 외부로부터 신규 이민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산동으로의 뱃길과 육로가 완전히 차단됐고, 기타 중국 대륙의 다른 지역에서의 이민도 불가능했다. 역으로, 귀향의 길도 막혀, 인구의 감소도 불가능했다. 물론 대륙과의 상거래도 완전히 중단됐다. 왜냐하면 대륙과 타이완의 양안 사이에 이르는 타이완 해협은 매일 포성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냉전체제 아래에서 한국은 본격적인 반공체제를 가동시키고 있었다. 비록 산동 출신이지만, 한화는 중화민국의 국적을 지녀야 했으며, 오히려 산동이 속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일제의 잔재인 한화에 대한 차별적 정책은 오히려 강화됐다. 우선 외국인은 공직에 종사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이미 2세, 3세를 배출한 화교의 사회적 위상은 제약을 받았다. 외국인 신분으로 200평 이상의 토지는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강세 업종인 농업을 포기하고 농촌을 떠났다. 그러나 결정적이었던 타격은 무역업의 몰락이었다. 우선 국제환경이 화상의 무역을 허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부의 외환 규제와 창고 봉쇄령으로 말미암아 화상의 경제적 입지는 대폭 줄어 들었다.

이제 한화의 직업 선택은 매우 단순해졌다. 음식업만이 살길이 된 셈

이며, 스스로 자조적인 표현인 “짜장면의 면발에 내 목숨이 걸린” 상황이 드디어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현재 한성화교 학교의 학부모 중 50% 이상이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다. 음식점 다음으로 다수가 종사하는 직종은 잡화상으로 결국 이것도 식당과 관련된 업종이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화는 종족성의 틀에 묶여 특정 직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맛보았다. 어떠한 측면에서는 시대적인 변화에 재빠르게 적응하여 자신들 종족성을 최대로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중국인의 무서운 생존력을 과시한 셈이기도 하다.

한편, 정부는 한화에 대해 비동화 정책을 채택했다. 우선 까다로운 귀화정책으로 화교들이 법적으로 외국인 신분을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로써 화교를 외국인의 테두리에 영원히 묶어 놓는데 성공한 것이다. 반면 교육에 대해 자유방임적 차별정책을 취했다. 얼마전까지도 화교학교는 교육 기관이 아닌 “임의단체”에 불과했으며, 동시에 대학입학 시에는 학력은 인정해주는 이중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화교학생의 학력은 오히려 저하시키도록 작용했다. 결국 화교사회는 한국사회에서 유리되기에 이르렀다.

한국사회와 화교사회는 서로 유리된 채로 지냈다. 특히 아직까지 음식업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과 중화요리에 대한 경쟁력 부재는 직업 면에서 경쟁적인 관계도, 보완적인 관계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서로 소외되는 관계로 발전했다. 단지 일부 한국인 학생들이 화교학교에서 수학함으로써, 일부 화교 학생이 한국의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서로를 고작 개별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쇠퇴기 (1970년대 중반-1990년대 중반)

1970년 대 중반을 기점으로 한화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다. 국제환경의 변화로 미국 등 구미 계통의 국가들이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이민의 문호를 열고, 국제정치에서 중국 대륙의 부상으로 인해 중국인에 대한 우호감정이 한층 깊어졌다. 하지만 한국사회와 격리 상태에 있었던 한화는 대다수가 이민의 길을 택했다. 동시에 화교가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요식업에 대해 한국인의 진출이 급증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양 사회 사이의 담은 오히려 무너지게 됐으나, 이는 한화사회의 쇠퇴를 뜻했다.

정부정책의 차별성은 물론 여전했다. 비록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

교를 정식으로 선언했지만, 한화의 위상에는 달라질 것이 없었다. 경제적 차별도, 교육적 방임도, 법적 제한도 여전히 계속됐다. 오히려 1977년부터 실시한 부가가치세는 화교사회를 더욱 궁지로 몰았다. 가족중심의 경영체제가 받는 경제적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가장 큰 변화는 한반도 밖에서 일어났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정착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이 출신지 이외의 곳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한화의 선택은 엑서더스(EXDUS), 대탈출이었다.

우선 국적을 지닌 타이완으로의 인구이동이 활발했다. 무엇보다도 국민당 정부의 해외 화교에 대한 관대한 대학입학 정책과 장학금 지원이 촉매가 됐다. 학업이 끝난 후 직업선택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제한된 한국으로의 귀향을 망설이는 한화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다음으로, 1970년 열린 세계 대박람회를 계기로 일본으로 취업차 출국한 후 그대로 눌러 앉은 한화의 수가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한화들이 가장 선호했고 대규모의 탈출이 이루어진 곳은 미국 등 북미국가와 호주 등지였다. 이들 소위 백인국가들이 다원주의 정책을 채택하면서 동양계 이민에 대해 문호를 활짝 열었던 것이다.

당연히 인구는 계속 감소현상을 보였다. 한국사회와는 더욱 격리됐다. 특히 70년대 남북한이 경쟁적으로 심화시켰던 한국인의 민족주의 감정은 1980년 5.18을 계기로 절정에 달했다. 골목길에서 딱지치고 고무줄하던 화교 아이들은 그 자취를 감추었다. 왜냐하면 한국인의 배타적인 민족주의 정서에 두려움을 느낀 한화 가정에서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 노는 것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정부의 자유방임적인 교육정책으로 말미암아 비동화적인 자세를 취한 화교학교의 교육 내용은 더욱 사태를 악화시켰다.

한화의 인구감소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고유 영역인 요식업의 인원 충원이 자체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자, 중화 요식업에로의 한국인의 진출이 활발해졌다. 이제 가족 구성원 또는 동향의 화교를 고용인 내지 계승자로 삼았던 인력충원 구조가 절대적 인구의 감소로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국인을 고용하고 자신들의 기술을 전수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종족성을 바탕으로 유지, 강화됐던 특정 직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드디어 무너

지게 된 셈이다.

총체적인 측면에서 한화의 고유 종족성은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민으로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 종족 특성을 살렸던 특정 직업에 대한 장벽이 무너지고, 정부정책은 커다란 변화 없이 여전히 차별적이며, 한국사회와는 더욱 격리됐다. 그렇지만 이 같은 시련 속에서도 한국 화교에게 새로운 봄은 서서히 오고 있었다.

신희망기 (1990년 후반-현재)

한중수교를 계기로 중국인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정책변화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다. 국제환경의 변화는 더욱 그러한 변화를 촉진시켰다. 그러나 양안 관계의 복잡성은 한화의 입장을 편안하게만 나두지 않기도 했다. 결국 한화 사회의 부흥의 움직임은 한화의 입장에서는 자생적이라기보다 외생적이며, 또한 한국사회의 입장에서는 자연발생적인 “안으로 들어는 세계화”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세계시장에서의 문화 다원주의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실용적 요구” 때문에 야기된 측면이 더욱 크다.

비록 한중수교가 1992년 이루어졌지만, 그로 인한 한화사회에 대해 미치는 임팩트는 1997년 이른바 IMF 위기, 즉 외환위기 이후에야 비로소 가시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시차는 한화의 “출신국” (sending country)이 지닌 특수성, 즉 양안의 대립이라는 외부적 현실에서부터 야기됐다. 다시 말해, 한국은 수교 당시 전통적인 우방관계를 지녔던 타이완을 무참히 “버렸으며” 이로 말미암아 타이완 국적을 지녔고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력하게 채택했던 한화의 입장을 한층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것이다. 반면 영사관리를 담당해 왔던 타이완의 입지는 좁아졌지만, 그들의 국적으로 말미암아 중국정부도 한화와 적극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형편이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정부의 입장은 한화문제에 대해 회피 내지 방임하는 쪽으로 설정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었다. 결국 한화사회, 타이완-대륙의 분단체제, 한국정부의 삼자 사이에 새로운 관계설정이 여전히 미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한국정부가 대화교 정책에 대해 다소나마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현상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한화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토지소유 상한의 폐지, 화교학교의 지위를 “임의단체”에서 “각종학교”로 승격시키는 등 이전의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물론 개선책 중 일부는

한화 자체에 대한 입장 변화라기보다 우리의 재외동포를 위한 지위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비롯됐다는 한계가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화교를 비롯한 정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결정을 꼽을 수 있다. 이는 김대통령의 인권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우러나온 결정일 수도 있지만, 재일한국인의 참정권 운동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 한층 강하다. 재일 학자 강재언 교수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재일한국인의 참정권 운동에 대해 항상 우리 정부의 화교 차별정책을 예로 들며 거부하고 있다 (주3).

그러나 한국정부의 전향적 태도는 한국사회에서 일고 있는 세계화라는 역사적 흐름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일본의 사례처럼, 세계화 또는 국제화는 “밖으로 나가는 세계화”로 출발하여 점차 “안으로 들어는 세계화”로 전환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 구체적으로,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일본 시민단체의 적극적 지지를 획득하여 실제로 지위 향상이 이루어진 시점은 바로 그 같은 전환이 발생한 무렵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유일한 소수 민족인 한화의 불평등 문제는 한국사회가 “내부의 세계화”와 함께 “내면의 세계화”를 당면과제로서 삼았을 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

아울러 국제환경은 한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예를 들어, 화교연구 불모지인 서울에서 세계화인연구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Study on Chinese Overseas)의 세미나가 열리면서, 한화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표하는 일군의 국내외 학자들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고난의 역정을 걸어 온 한화에 대해 문화 다원주의적 관점에서의 학문적 관심과 동시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연대적 지지를 표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1999년 호주의 세계화상대회는 서울에 추진 중인 차이나타운 건설을 위한 설명회를 무료로 마련해 주는 등 특혜를 베풀었다.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형성되는 세계화라는 물결 속에서 한화에 대한 관심과 우호적 분위기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역사적 흐름인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정부와 사회가 “세계시장에서의 문화 다원주의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실용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즉 자신들의 폐쇄성과 이중성에 대한 자기성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분명 한화가 새로운 부흥기를 맞게 된 배경에는 한국사회와 한국정부의 현실적 판단과 요구가 있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국경제인협회의 설립(1998년)에 도움을 아끼지 않고, 인천, 제주, 부산 등 여러 지방 단체들이 사라진 차이나타운의 건립을 적극적 추진하는 것은 모두 실용적 요구 때문에 비롯됐다. 무엇보다도 화교자본의 유치를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아울러 개방사회를 상징적으로 과시함으로써 외자유치 전반에 촉매제를 마련하자는 매우 실리적인 계산이 뒤에 숨어 있었다.

그 배경이야 어찌 됐던, 화인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잡지인 아주주간(亞州週刊)이 평한 대로, 지금 “남한의 화인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다” (1999년 8월 9-15일). 실제로 해외로 흘러진 한화 중 일부가 역이민을 통해 한국으로 되돌아 오는 사례도 발견된다.

8. 새로운 도전과 응전

과연 얼마만큼 희망의 시대를 구가하느냐는 한국사회, 정부정책이나 국제환경, 양안 정부의 태도 등에 달려 있지만, 한화 자신들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선 자신들이 지난 백년 이상의 기간 중 겪었던 정착기-발전기-혼란기-정체기-쇠퇴기-신희망기로 이어지는 역경의 역사를 되돌아 보고,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도록 애쓰는 한편 한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도 필요하다. 마치 일본에서 재일 한국인들이 참정권 확보 등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운동을 전개하듯이, 한국의 화교들도 자신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조직적으로 펼쳐야만 한다.

다행히도 이들과 연대하려는 한국사회의 성원들이 이미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작년 9월 중 한국의 권위지들이 앞을 다투어 한화에 대한 기사와 논평을 실었고, 심지어 어느 신문은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라는 제하의 논설을 통해 화교사회에 대한 우리 정부와 사회의 관심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국 한화의 위상제고는 한국사회가 현재 추구하는 세계화를 향한 진전도의 척도가 될 수 있다. 동시에 한화는 새로운 환경변화를 통해 마련된 전환의 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일정한 원칙은 상호간에 필요하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이른바 공자의 “화이부동”(和而不同) 논리를 제시함으로 이 글을 마칠까 한다. 세계화라

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힘입어, 한국정부는 물론 대륙이나 타이완 정부가 다같이 협력을 아끼지 않는 가운데, 한국사회와 한화사회가 “함께 조화하면서 서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주1) 중국의 어느 학자는 한국은 가장 최초로 중국의 이민에 의해 이루어진 나라라고 주장하는 바, 그 같은 관점에서는 우리 한국인 모두가 화예가 될 수 있다 (潘 翩, 1998).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인도, 국내의 화교도 그 같은 관점은 전혀 수용하고 있지 않은 듯 하다.

주2) 최근 서울중국학중심과 동아일보, 그리고 중국 최대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 Shina와 光播學院의 IMI 연구소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중국인 7,000 여명 중 62%가 한화를 중국인으로 보는 반면 92%는 조선족을 중국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인 5,000 여명 응답자 중 62%가 한화를 중국인으로 인식하면서도 67%는 조선족을 한국인으로 보고 있다. (www.sccs.co.kr).

주3) 이러한 까닭에 강교수를 중심으로 재일 한국인들이 최근 한화를 연구하는 모임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주요 참고문헌

- 박은경 (1986) 한국 화교의 종족성. 한국연구원
양필승 (1995)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문화정치학. 천주교 부산교구 부산사회
사 연구소 주최. 종교, 민족, 그리고 갈등. 세미나 발표문. 77-83쪽.
____ (1993) 변경-개척-이민의 땅, 만주. 중국연구. 1.4: 22-45.
우심화 (1999) 한국 화교교육의 실태와 전망. 서울中國學中心 주관. 화교네트
워크와 차이나타운 심포지움 발표문. 111-212 쪽.
潘 翩 (1998) 海外華人百科全書. 三聯書店. 홍콩.
Choi, Sheena (2000) Educational Choices of Ethnic Chinese Minorities in
Korea: Trends and Policy Implication. From Proceedings for ISSCO Seoul
Conference 2000.

- Norbu, Dawa (1992) Culture and the Politics of Third World Nationalism. London: Bourtledge.
- Sinn, Elizabeth ed. (1998) The Last Half Century of Chinese Overseas.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 Wu, D.Y.H. & McQueen, H. & Yamamoto Y. (1997) Emerging Pluralism in Asia and the Pacific. Hong Kong: Hong Kong Institute of Asia-Pacific Studies,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 Young, Crawford ed. (1993) The Rising Tide of Cultural Pluralism: The Nation-State at Bay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韓國華僑的昨天、今天和明天：迎接充滿新的希望的時代

梁必承
建國大學校 教授

韓國華僑，即韓華的歷史，大致可以分為6個階段。自19世紀後半期至1910年韓日合併前後，韓華形成定居局面的；此後直到1931年發生滿洲的萬寶山事件，以很快的速度發展起來。但是，到1950年發生6.25戰亂時形成混亂期，接着看到1970年代中期經歷了停滯時期。尤其是1997年韓國碰到外匯危機(金融危機)，韓華衰退，但是今天正在迎接充滿新的希望的新時代。

1. 韓華的真面目

生活在韓國的韓華，也就是韓華的祖先，大部份是從中國的山東過來的，但是現在他們的大部分國籍不是中華人民共和國，而是中華民國，即台灣的。總的人口也處於持續減少的趨勢，現在大約不到兩萬人，但是保持着顯明的文化特性，並作為在韓國的唯一的少數民族牢固地存在。

首先，華僑的定義就是相當複雜的。現在中國政府採取的立場是分為華人和華僑。前者是指用父系主義的觀點，父系的祖先屬於中國民族，但取得了現居地的國籍，沒有中國國籍的集體；後者規定為維持中國的國籍，沒有現居地國籍的集體。另一方面，學術界在如上的劃分中又增添華裔的概念，即從上述的華人範疇中再細分出一個集體，他們將自己不認為是現居地僑民社會的一員，而只在文化方面認為自己的父系祖先是從中國移過來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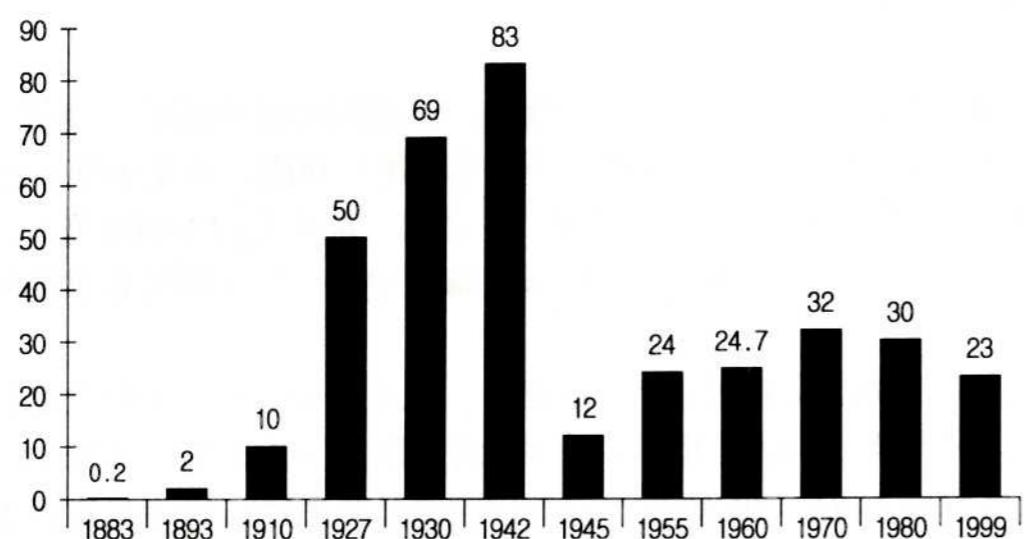
“現在”韓華在上述三類中只由華人和華僑組成。由於韓國和中國

的特殊歷史關係，從主客觀上就不能認為所謂的“華裔”。(注 1) 現在，無論是韓國還是中國，都將家長制父系血統主義作為國籍法的基礎，所以掌握韓國國籍華人的統計十分困難。再加上國的國民也主觀地將韓華和中國國內的朝鮮族認為是自己的國民以至自己的民族，因此除了最近歸化的華人以外，對他們的掌握是不容易的。

據法務部的最近統計，韓華的人數為23,282名左右；據推測，實際居住在國內的人數為比此少的18,000名程度。這種統計上的差異，是由于持有韓國法務部發行的外國人登記證，卻因留學等原因實際生活在海外的人數相當不少而引起的。

下圖作為表示韓華增減的圖表，在將韓華的歷史進行時代劃分方面將會重要的暗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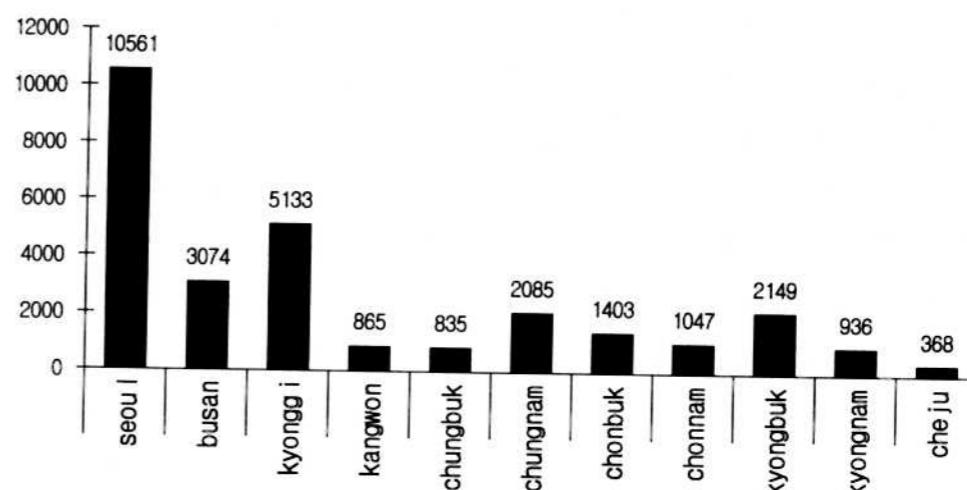
圖表 1. 韓華的不同時期的人口增減(單位:千名)



按區域看，聚集在漢城生活的占據壓倒性的人(圖表 2)。定居初期，仁川華僑的人數比漢城多，但是以後華僑人口一直集中在漢城。不言而喻，這是因為韓國的政治、經濟以漢城為中心形成的，同時，在

華僑社會中從事商業等城市性職業的人很多的緣故。最近報道說，北韓的金正日委員長在平壤招待華僑，表示謝意；據推測北韓華僑的人數是一萬名左右。解放前，北韓的華僑比南韓多，如果考慮到韓半島的地理條件，移民通過陸地通道才可能實，這一事實當然的結果。

圖表 2. 韓華的地區分佈 (1982)



參照：1999年韓華的主要居住地區是漢城(8,000名)，仁川(3,300名)，釜山(2,5000)，大邱(1,800名)等。

在韓華社會，壓倒性的人是山東出生的。據駐韓台灣大使館的1983年統計，94.6%的人出生于山東。尤其是形成海外華人社會主流的廣東人是1,000人中只有一名。山東出生的人占有壓倒性多數的原因，當然是由於地理上接近韓半島，容易靠近的緣故，但是形成韓華大規模移民的20世紀上半期，首先在於山東的處於社會經濟環境。山東衰落的農民在小農經濟處於沒落的危機時，通過季節性移民謀求生存，在陸地上到達滿洲地方，通過海路走向韓國和日本。他們不是以家庭為單位的集體性移民，而主要是選擇了以家長或兒子為中心的個別的，

暫時性的移民方法。其結果不僅從初期開始，男子人口占有壓倒性的比例，而且自然的形成與韓國人女子大量結婚。

由於儒教社會的傳統，在中國人男子與其居住地的韓國人女子結婚的情況下，作為華僑社會的一員，其地位沒有變化，韓國的國籍法使得此種現象更加得。即因為我們的國籍法帶有父系主義色彩，當韓國人男子和中國人女子結婚，不僅新婦很容易獲得國籍，而且連他們生的子女也自動地獲得韓國國籍，但是相反的情況不行。實際上在華僑社會，對嫁給韓國人男子的女子採取敬而遠之的態度，對迎接韓國人新娘持很寬容的態度，實際上述的事例是非常普遍的。

這種情況就造成男女人口比例的嚴重不均衡。引起這種現象發生的首要原因是，有很多的華僑女性選擇出境到台灣或它國家後不願回國了。很明顯，韓國社會對華僑的不平等對待，與東方社會根深蒂固的男女有別意識有很大的關係。

韓華的絕大多數出生于山東的事實，是國際華僑社會中說明韓華異化的因素之一。首先，形成主流的廣東等南方出生的華僑和韓華感到的語言上的異質感，如同與說英語的人和德語的人之間的關係一樣。從全世界華人網絡是以稱為交易的實用的種族性為基礎形成的觀點來看，語言上的相乖現象同時表明韓華社會的停滯和孤立。

韓華的種族性依靠出生于同一地區，使用同一語言，大致上很好地維持著同質性，特別是保持着著封閉性的婚姻習俗，從而得到了加強。然而，不象外國的其它少數民族社會一樣，宗教並沒有作為強化韓華凝聚力的因素起作用，多數華僑認為自己是佛教信徒，而實際上在寺廟裡供佛的次數極少。基督教教堂與整個信徒相比數量比較多，這是因為基督教章程規定每週要做禮拜和韓國社會中基督教有勢力。大體說來，似乎不存在使全體華僑社會團結起來的主導性的宗教或者宗教團體。

代替宗教的意識形態，到現在為止起着加強了強化韓華團結力的作用，但是影響力正在急速減小。6.25戰亂時，約有200余人參戰，以祖

先的軍隊---中共軍為對象展開幾乎接近全部陣亡的犧牲性的戰鬥等，積極參與反共行列，這是在韓半島的當時狀況下，自己地選擇現在居住的國家---大韓民國為自己國家，而不是祖先的國家---中國的結果。此後，強烈的反共意識形態成為韓華社會的向心點起作用，特別是保留着台灣國籍，從而使意識形態在促進韓華團結方面發揮了巨大的作用。

然而，隨着1992年韓國和中國的建交，韓中之間的交流頻繁，相當數量的華僑通過民眾交流提高了經濟地位，尤其是從大陸通來的留學生、公司駐當地辦事員等新移民擡頭，與他們頻繁接觸，結果意識形態急速喪失了作為向心點的作用。同時，因為他們自己的原籍是中華人民共和國的山東，逐漸增加的對故鄉的訪問或者民眾投資使得積極標榜反共意識形態處於困難的狀態。最後，最近國民黨在台灣的長期執政劃上了終止符，實現政權交替，從而使意識形態不是起到團結韓華社會的作用，反而起到使其分裂方向作用的可能性提高。

從外部人的觀角來看，韓華社會的團結力似乎不許。特別是華僑協會等機關所具有的組織力和機能正在急速衰退，傳統的宗派主義還有殘存，使團結力衰退、指導力脆弱進一步加深。事實上宗派主義是與韓華的移居過程有密切關係的歷史性產物，其背景是由勞動者移民或者商業組織等通過“幫”組織起來的。稱為“苦力”的中國勞動者，在叫做“把頭”的頭目下面，將10-20名“苦力”建立起共同食宿等相互緊密的關係，從而組織了起來。這種“幫”的組織，現在其形態本身已經消失，但是作為宗派主義的歷史性根基好像還有某種程度影響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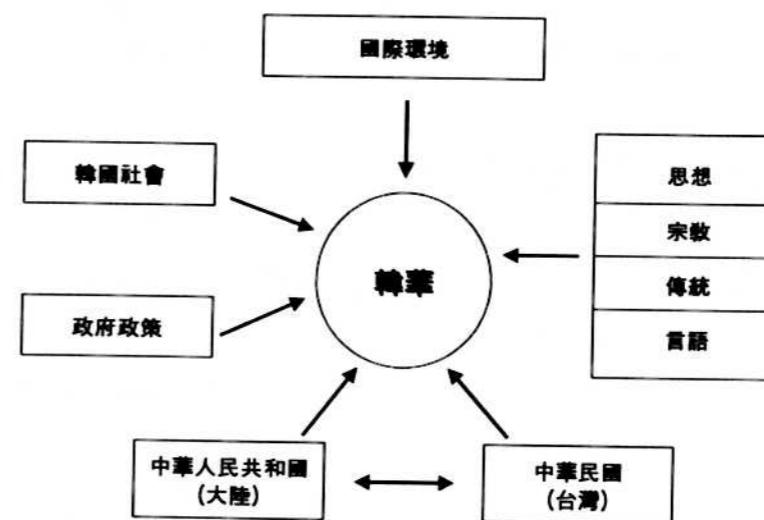
從組織側面看，將韓華社會的團結力繼續保持下來的機關可以說是華僑學敎。華僑學校自1902年在仁川最初設立以後，到1998年已有28個小學、4個中高等學校，共有在校學生3,125名。(Choi 2000.8; 于心華, 1999.12) 學敎的前後輩的關係，華僑社會的團結力被維持下來，而且通過學校的教課過程繼承了對傳統的學習。事實上，反共意識也正是通過華僑學校得到了加強，但是正如前面指出的，據推測，國內

外環境的變化，給意識形態教育以相當多的制約。

語言、傳統、意識形態以及宗教等各因素所占的份量，隨着時間的變化會有所不同，然而韓華在保持自己種族的真面目，即種族性方面取得了成功。儘管處在人口急速減少的趨勢下，以學校等為中心作出了有組織的努力，保持着真面目和凝聚力。如果說以上是通過語言、傳統、意識形態和宗教之類的內部因素觀察他們的文化真面目，那麼下面準備根據國際環境、韓國社會和政府政策的關係、台灣和大陸的關係等外部因素，如何保持種族性和韓華社會的力量是如何變化的，按不同時期進行觀察。

下圖是把外部因素和內部因素的相互關係通過圖畫使之公式化。所謂國際環境是指影響超越國境的韓華地位的日本帝國主義或者冷戰體制之類的因素。所謂韓國社會是指形成華僑的日常生活和他們作為一部分所屬的大框架內的現實社會。政府政策是韓華出現結果，在形成國民國家的歷史過程中的產物，所以是左右教育制度、經濟政策或者國籍法等十分重要的外部因素。最後，大陸和台灣是為說明與華僑的出生國家的關係而設定的因素。國際環境這因素有密切的關係，同時，大陸和台灣的兩岸關係，即中國的現實的分離關係比猶太人之類其它移民社會和他們祖先國家的關係更加複雜，使韓華處於更複雜的關係之中。

圖表 3. 對韓華的真面目帶來影響的變數



2. 定居期(19世紀80年代初--20世紀末)

以寅午軍亂(1882年)為契機開始正式涌進的中國人移民，在初期借助清朝廷的影響力，華人在韓半島上形成自己的商圈勢力取得了成功。此后，在清日戰爭中失敗的清朝，政治統治力量減弱，但是仍然以經濟分工為前提，可以保持與韓國社會互補的關係。而衰退的朝鮮王朝反而採取放任的姿態而不是自我制約，從而使在韓華社會實現了成功的定居。

正如前文提出，中國人到韓半島移居，可以追述到古朝鮮時代。然而，在東方文化的這個大框子內，中國人移民反而帶來在韓半島文化裡被同化的後果，因此在我們的社會難以找到“華裔”的概念。今天的韓華，比較有說服力的追述其起源是在19世紀後半期，以寅午軍亂為契機，與清朝軍隊進駐韓半島一道涌入的一群商人開始定居下來那時開始的。

寅午軍亂以後，清朝和朝鮮締結了“朝清商民水陸貿易章程”，賦予中國人可以在開港地區擁有、租借土地和民宅的權利。切實擁有這類法律性保護網的中國人，從海路到仁川，從陸路到新義州，或者離清到達日本，再移居到韓半島等種種途經。特別是持有與日本競爭意識的清朝曾有意扶持了中國人對韓移民。

盡管清日戰爭(1895年)，中國的影響力減少，但在列強的侵略中，朝鮮政府的地位變得無法描述的特別脆弱。這導致它放棄了對外國人的控制。而華僑與其他外國人一道反而享有優越的地位。特別是華商的經濟地位受遭到威脅時，領事館會直接出面進行保護。同時，還有簡便方法可以擁有土地。那時，對包括華人在內的外國人的規定已經可以法律化，然而由於我們政府的懦弱，完全沒有它的實效。

同韓國社會的關係，不是沒有細小的紛糾，但是基本上保持了互補的關係。未能從傳統土農工商的框架中擺脫出來的我們社會，不僅沒有在同華商較量的競爭的位置上，反而認為發揮掌握對外交易的華商的作用是必要的。盡管零售由我們商人承擔，但是批發、貿易不得不依靠華商。因此，在經濟上有分工關係，所以華僑和我們社會直接衝突的情況不多。

19世紀末以來，迅速發展的華僑社會，在韓日合併以前，已經達到人口突破一萬名的程度。清政府初期行使過統治的影響力，在清日戰爭以後迅速喪失，但是作為外國人的華僑的地位乃牢固。我們政府的法律權威完全未能達到，只是因經濟上的分工關係，我們社會和韓華社會可以保持共存的形態。因此，華僑社會可以在韓國社會成功地扎下根。

3. 發展期(20世紀10年代初--20世紀20年代末)

清朝滅亡以後，政治混亂加速，但來自中國的移民繼續沒斷。然而，日本終於合併了，開始施加強有力的制約，由於都是被壓迫民族這一共

同點，所以韓國社會和華僑社會可以照依維持良好的關係。

1911年的辛亥革命推翻了兩千年的專制政治，接着中國陷入政治混亂。特別是軍閥政治上台，對農民的經濟的掠奪進一步加強，許多農民為了尋找新的土地和工作離開了故鄉。自然，移居到地理位置很近的韓半島的中國人的人數急增。這時，僑人口側重於北韓，1920年占52.4%，1934年占66.4%，到1942年增加到82.8%(Park, 75)。另一方面，華僑不僅到城市，也涌向農村地區，職業分布更加多樣化起來。

日本帝國主義者懼怕華僑人口增加趨勢，實施了單方面的制約政策。首先以限制居住區、華僑勢力強的貿易部分作為制裁手段，大幅度提高了官稅。同時發現一部分華人有組織地展開抗日鬪爭時，就實行與韓國人心理離間的措施，早在1927年就開始發動了正式的華人離間運動。

在這個時期與韓國社會間的衝突局面也開始正式形成。中國，尤其是山東經濟不穩定引起了大量移民。大多數是農民的華僑搶走了韓國勞動者的飯碗。特別是在北方新工業地帶韓國人與華僑必然性地展開了激烈的競爭。然而，那時華僑移民還不能稱得上是定居，由於只是季節性、暫時性的居住，因此衝突是可以得到控制的。且最重要的是通過抗日互相聯合起來，尤其是在貿易等大單位商業里對那些壓住日本人維持自己商權的華僑，韓國社會持相對友好的態度。

國際環境製造了中國華北地區所發生的流民難以制止的現象。特別是在山東和韓半島中間的滿洲地區我們韓民族的移民和從山東等地的華北地區涌來的中國移民混居在一起。另外日本體制性的侵略使中國對作為邊境地區的滿洲的統治能力達到幾乎喪失的程度。在這種背景下，中朝的國境實際上已達到相通的狀態，因此中國移民也就難以阻止。這樣就在萬寶山事件發生前的1930年，韓華的人口達到7萬名左右。(Park, 71-2)

當時韓華社會以很高速度發展起來，甚至達到在朝鮮華商是最高納稅者的程度。雖然排斥的華僑運動早於1927年起就發起了，但未至

到嚴重影響與韓國社會的關係的程度。然而在勞動者階層裡對立與衝突漸漸達到危險水平。日帝因為害怕華僑與朝鮮人的聯合，所以不僅展開了心理離間運動，而且還實施了對華僑經濟活動進行制約的各種政策，但是韓華的社會經濟形勢沒有受到很大的威脅。

4. 混亂期（20世紀30年代初-20世紀40年代末）

實際上儘管日帝的離間政策再加上，1931年的萬寶山事件使韓國社會與韓華陷入衝突危機之中。日帝更加露骨地實行統制政策，外加滿洲事變和中日戰爭造成的國際關係的惡化更使韓華處於困難境地，即使這樣韓華仍顯示了堅韌不拔的生命力。

在滿洲朝鮮移住民和中國人間的衝突被蓄意夸大，因而激化了排華情緒。甚至韓半島發生了約700名傷亡者的大規模虐殺事件。根據韓華中還在世的一位老人回憶說，這一事件對華僑社會的影響可以說是破壞性的。因這一事件的發生韓華人口約減少40%。這可以算是當時利用官制用語輿論蓄意謀化離間戰略的總督府的政策的最終成果。由於中日戰爭的爆發，國際環境惡化。韓華的人口又一次減少，不過到了1942年8月又增到約8萬名。這是因為不能阻止為逃避日本的侵略而形成的中國的移民浪潮而造成的。然而當太平洋戰爭正式開始，中朝間移民隊伍就斷開了，就在戰爭要結束的1945年韓華的人口僅剩下12,648名。

這個時期是嚴重人口數量增減浮動時期，戰後人口又持續增長到6.25戰亂發生前的水平，達到18,000名。這種人口增長現象是由于中國大陸發生國共內戰及韓國政治混亂形勢下，政府的統治政策絲毫沒有任何作用引起的。不僅如此，作為國際貿易商的華商的能力仍然能夠充分發揮。特別是在韓中貿易占韓國貿易總交易80-90%的情況下，韓華的經濟地位必然性的會得到大發展。

在混亂期韓國社會和韓華曾轉入衝突狀態。政府的政策是在日帝

強佔期作為制約日兵的政策，解放後過渡期在無政府的放縱狀態下，韓華的社會經濟地位一次次漂浮不定，這如實地反映了人口的增減。最後，國際環境對持續移民集團的形成有促進性的作用，只是會因中日間的敵對關係的介入有過間斷中止行為。

5. 停滯期（20世紀50年代初-20世紀70年代初）

韓半島內戰的發生和中共軍的參戰將新移民從外部攔腰截住。韓華只經歷自然性人口數量的增加，而兩岸關係的對立阻止了質的提高。政府的政策是使韓華的地位下降一層，而且韓國社會對他們大體採取的是漠然的態度。

製造了使世界進入真正的冷戰體制的契機的6.25戰爭把韓華社會引入停滯期。然而，人口在1976年持續增長到32,436名水平。這可以從自然增加角度來說明，因為從外部進入的移民完全被拒之門外。主要是因為從山東出發時水路和陸路完全斷絕，而從中國大陸的其他地方移民又不可能。通往火車站的路和歸鄉的路都被攔斷，所以人口也不可能減少。當然和大陸的商業往來也完全中斷。這是大陸和台灣間的台灣海峽連日炮聲不斷的緣故。

在冷戰體制下韓國運用了正式的反共體制。持中華民國的國籍的韓華，對山東人所從屬的中華人民共和國卻不得不採取敵對立場。且日帝又雪上加上霜，加強了對殘存韓華的歧視政策。首先因為有外國人不能從事公職的規定，所以已經有了二代，三代的華僑的社會性地位就受到制約。因為作為外國人不能享有200平方米以上的土地，所以放棄了作為傳統性的優勢業種的農業而離開農村。然而致命性的打擊是商業的沒落。初是，倉庫的封鎖令使華商的經濟活動範圍大幅度地下降了。

處于此種形勢下韓華的職業選擇變得單純起來。從事食品業便成

爲生存之路，正如他們自我描述的‘命掛在炸醬面的面絲上’的情形到底是出現了。實際上漢城華僑學校學生的父母中有50%以上的人現在正是從事著這種食品業。除了食品業以外大多數從事的是百貨商業，然而就連這也沒跳出屬與飲店相關聯的業種的限界，所以韓華被套在種族性的圈子裡，出現了只集中從事特定職業的現象。從某種角度來看，這也表明了迅速適應時代變化，最大限度實用性地發揮自己的種族性的中國人的驚人的生存力量。

一方面，政府對韓華不採取‘韓化’政策。首先，要想通過複雜的歸華政策使華僑擺脫掉法律上的外國人身份十分不易，這成功地將華僑永遠地放在外國人的圈子裡。另一方面，對教育採取了自由放任的歧視政策。直到不久前華僑學校還不能作爲教育機關，而只不過是‘任意團’。同時進入大學時採取承認學歷的兩種立場，這使得華僑學校的學歷反而降低了。結果使華僑社會達脫到離韓國社會的水平。

韓國社會和華僑社會保持互相脫離的姿態。特別是到現在爲止，韓國人對食品業的關心以及與中華料理的競爭從職業方面看，無論是競爭性的關係，還是完善的關係都不成立，且發展到互相疏遠的狀態。只是一部分韓國學生在華僑學校學習，而一部分華僑學生在韓國的大學學習，這使得雙方的理解只停留在極個別這一水準上。

6. 衰退期(20世紀70年代中期-20世紀90年代中期)

以20世紀70年代爲起點，韓華人口開始大幅度減少。隨著國際環境的變化，美國等歐美國家開始立足多元化主義，並打開了移民的門戶，國際政治權謀中因爲中國大陸地位的上升使人們對中國又加深了一層友好感情，但是曾與韓國社會處於隔離狀態的韓華大多數選擇了移民的道路。同時從事華僑幾乎占獨佔地位的飲食業的韓國人劇增。現在兩個社會間的壁壘已慶被推翻，這意味著韓華社會的衰退。

當然政府政策的差別性仍然存在。儘管1992年正式宣佈韓國和中

國建交，但韓華的地位無任何變化。經濟的差別，教育的放任，法律的制限仍繼續存在。倒是1977年開始實施的附加價值稅使韓華社會陷入困境。以家庭爲中心的經營體制受到的經濟打擊是不必多說的。

最大的變化在韓半島以外出現。許多的人去旅行，許多的人離開自己出生的地方到別的地方去定居。據測定現在全世界大約有二億人不是生活在大脫離自己出生的地方。在這樣的背景下韓華的選擇就是大脫離。

首先帶有國籍通向台灣的人口活躍起來。這是國民黨政府對海外華僑的寬大的大學入學政策和獎學金的提供所促成的結果。學業完成後選擇職業時的自由對於正猶豫著回不回實際上受限制的韓國的韓華來說是具有相當大的吸引力。其次，1970年趁世界博覽會之際爲了求職去日本的人中大多數是韓華。然而韓華最向往並大規模地移民形成的聚居區的是美國等北美國家，澳洲等地。這就是所謂的白人國家選擇多元主義政策的同時爲東洋界移民的大開門戶。

當然人口持續減少現象還在繼續，且和韓國社會更加隔離。特別是70年代促使南北韓競爭深化的韓國人的民族主義感情在1980年5·18事件達到了頂點。連曾在港子區玩耍的孩子的影子也不見了。因爲對韓國人排他的民族主義感情持有恐懼感的家庭，禁止孩子外出玩耍。同時，在韓國政府自由放任的教育政策下，只注重沸騰的姿態的華僑學校的教育內容更惡化了。

由於韓國人口的減少，自己固守領域飲食業的人員總數不足的現象出現，接着從事中華飲食業的韓國人多起來。現在家庭成員雇用東洋的華僑的人乃至被當作繼承者的人力，因人口的絕對性減少而成爲不可能的事情。因此無奈之下雇傭韓國人，而這就不避免使自己的技術外傳。結果以宗族性爲基礎保持強化下來的特定職業的障壁終于倒下了。

總起來說，韓華的固有種族性處於危機狀態。因移民而人口絕對減少，能發揚種族特性的特種職業的障壁也倒下，政府政策沒有大變

化仍然具有差別性，因此韓華與韓國社會越來越隔離了。但是在這種考驗裡新的春天正慢慢地在韓國華僑起來。

7. 新希望期(1990年後半期 - 現在)

韓中建交後，對中國人認識上的變化及政府政策的變化正慢慢出現。國際環境的變化更促進了這種變化。然而兩岸關係的複雜性卻給韓華的立場製造了許多不便。最終韓華社會的復興，在韓華的立場上，與其說是自發的，倒不如說是外部促成的；在韓國社會的立場上，與其說是自然產生的“進入內部的世界化”的努力下，還不如說是因為在世界市場上文化多元主義交流(Communication)的實用要求之下產生的。

雖然韓中1992年實現建交，但由此對韓國社會引起的影響象1997年的IMF金融危機，一即外匯危機之後可視化才形成。這種時差是由韓華的出生國(Sending Country)所具的特殊性，即在兩岸對立的這一外部的現實裡開始而產生的。換句話說，韓國在修交時將保持了傳統友好關係的台灣殘忍地拋棄了，也因此給持台灣國籍具強烈的反共情緒的韓華製造了一些困惑。

反面一直擔當領事管理的台灣的立場軟化了，使得另一方面由於國籍原因中國政府在設定與韓華積極交往的關係時也不禁猶豫不決。不幸的是，韓國政府在立場設定上給人以對韓華問題採取迴避甚至放任的態度的印象。結果韓華社會，台灣大陸的分斷體制和韓國政府，這三者間新的關係的設定直到現在仍然被拖延着。

最近韓國政府對華僑政策多少呈現專向的姿態，這不能不讓人感到慶幸。象對包括韓華在內的外國人土地所有的上限的廢止，使華僑學校的地位從“臨時團體”昇格到“各種學校”等以前採取差別態度的制度正在改善之中

當然改善政策當中的一部份與對韓華的態度發生改變的說法相比，反倒應認識到，其到後加作為具有提高我們同胞地位的政策中一

環，有其局限性。

金大中總統關於賦予以華僑為止的定居外國人以地方選擇的參加權的決定就是一代表性的事例。這可能是金大中總統對人權問題持有高度關心情況下做出的決定，但對在日韓國人的參政權運動進行支援的意義上更深一層。據在日學者姜在彥教授所言，日本政府對於在日韓國人的參政權運動常常以我們政府對待華僑的歧視政策為例進行拒絕。

然而不能否認韓國政府轉向性態度與進入韓國的世界化的歷史潮流有密切的聯繫。如同日本，世界化或國際化從‘走向外面的世界化出發漸’漸轉換成‘走回裡面的世界化’的這個過程是非常顯然的。具體說來，在日韓國人的法律地位問題已真正開始抬頭，獲得日本市民團體的積極支持並實際形成地位提高的時刻正是那種轉換發生的時刻。同樣的觀點下，作為唯一少數民族韓華的不平等問題是韓國社會把‘內部的世界化’和‘內面的世界化’當作當前的課題來看時是個一定要首先解決的課題。

同時國際環境正對韓華喚起新的關心。例如，在華僑研究不毛之地的漢城召開了題為‘全球華人研究學會’的學術研討會，同時一批對韓華表示學術上的關心的國內學者出席。這可以看作他們對無數次從逆境裡走出來的韓華表示出從文化多的元主義觀點。

出于的學術上的關心同時支持人道主義連帶性，再就是1999年澳大利亞的世界華商大會為促進唐人街(Chinatown)在漢城的建成設免費說明會等就是最好的說明。

在這種由國內外結合形成的世界化浪潮裡面對韓華持關心，友好態度的氛圍正在慢慢形成，這裡面也包含歷史性潮流的側面，但實際上不能否認這是韓國政府和社會想對世界市場上的文化多元主義的交流的實用性要求應付的問題意識的形成的。即這不意味著是形成對我的閉塞型與二重性的自我反省。

很明顯在韓華迎接新的復興期的背景下，韓國社會和韓國政府曾

有過的現實性判斷和要求。中央政府在立場上毫不吝情地對韓國經濟協會的成立提供過援助，積極促進在仁川，濟州，釜山等數地消失的唐人街的建設是在實用性的要求下形成的。更重要的是，有通過維持華僑資本來克服外換危機，同時把開放社會作為象征來展示，從而為外資維持準備全盤的催化劑這種非常實際的計算藏在背後暫不管那個背景是怎樣形成的。據在華人中間最具影響力的雜誌〈亞洲週刊〉所評論，現在‘韓國的華人正擁抱著新的希望’（1999年8月9-15日）實際發現流向海外的韓華中的一部份中有通過再移民又回到韓國來的事例。

8. 新的挑戰與應戰

嘔歌的時代到底充滿多少希望，取決于韓國社會政府政策或國際環境。兩國政府的態度等，但韓華自身的努力是絕對不可以缺少的，回顧過去百年多來所經歷的由定居期 - 發展期 - 混亂期 - 政體期 - 衰退期 - 新希望期組成的充滿逆境的歷史，在費盡心思強化自己的文化整體性的同時應該有積極參與韓國社會的態度，正如在日韓國人為打開參政權提高法律地位，在日本展開系統化的運動一樣，韓國的華僑也應該為申張自己的權益而付出有組織的努力。好在願與他們聯合的韓國社會成員已有不少。比如，去年9月裡，韓國的一些權威性報紙都收錄了有關華僑未來的報導和評論，甚至有新聞通過題為“沒有唐人街的國家”的論述，強烈呼籲了我們的政府和社會對華僑社會的關心。

韓華的地位提高可以達到向著韓華社會追求的世界化進展的程度。同時韓華應毫不吝情積極運用新的國際環境所提供的轉換的契機的智慧和努力。然而相互間需要一定的原則。我下邊提出為實現這一點的方案的孔子的‘和而不同’的倫理，結束這篇文章。借助世界化國際環境變化的力量，在不僅是韓國政府而且大陸，台灣政府都不遺余力

的合作中，應該確立韓國社會和韓華社會一起協調維持彼此的整體性的關係。

注 1) 中國的某學者認為中國移民最早是在韓國形成，依此類觀點我們所有的韓國人都可能是華裔，但是事實上無論是韓國人還是國內的華僑好像都絲毫不接受這種觀點。

注 2) 最近據漢城中國學中心，東亞日報及中國最大的因特網門戶網站sina和廣播學院的IMI研究共同調查7,000名中國應答者中，62%的人認為韓華是中國人，92%的人認為朝鮮族是中國人。而5,000名韓國應答者中62%認為韓華是中國人，67%認為朝鮮族是韓國人(<http://www.sccs.co.kr>)

注 3) 因這種原因，以姜教授為中心的日韓國人最近結成研究韓華的組織。

主要參考文獻：

- Park, Eun-kyung (1986) 《韓國華僑的種族性》韓國研究院
梁必承 (1995) 《有關東亞和平文化政治學》天主教，釜山教區，釜山社會
史研究所主辦《宗教，民族和衝突》學術討論會發言文 P77-83
—— (1993) 變更-開拓-遺民的土地，滿洲，中國研究 1.4:22-45
于心華(1999) <韓國華僑教育的現況和展望>Seoul中國學中心主管華僑Network和
chinatown Symposium發言文 P111-212
Choi, Sheena (2000) Educational Choices of Ethnic Chinese Minorities in
Korea: Trends and Policy Implication. From Proceedings for ISSCO Seoul
Conference 2000.
Norbu, Dawa (1992) Culture and the Politics of Third World Nationalism.
London: Routledge.
Sinn, Elizabeth ed. (1998) The Last Half Century of Chinese Overseas.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Wu, D.Y.H. & McQueen, H. & Yamamoto Y. (1997) Emerging Pluralism in
Asia and the Pacific. Hong Kong: Hong Kong Institute of Asia-Pacific
Studies,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Young, Crawford ed. (1993) The Rising Tide of Cultural Pluralism: The
Nation-State at Bay?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화교의 현황: 경험적 사례를 중심으로

하 덕 재
한성화교협회 총무국장

旅韓화교에 관심을 보여준 한국의 정계, 법조계, 학술계 인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48년 한국의 해방이후 민주공화국이 건립되면서 당시의 旅韓화교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동안 동경해 왔던 자유를 꿈꾸며 한국을 제 2의 고향으로 생각하면서 삶을 영위한지 벌써 4대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4.19, 5.16을 겪고 난 후 탄생한 신정부 하에서의 旅韓화교들은 정부의 억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화교의 농경지는 정부가 강제로 저가에 매매토록 했고, 부동산주택은 200평 이내, 상점은 50평 이내로 소유를 제한시켜 놓았습니다. 4만 8천여명의 旅韓화교들이 미국 등지로 이민을 떠났거나 고국으로 돌아가고, 이제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는 2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 한국대학 중 일부 단과대학은 원천적으로 화교의 입학을 허락치 않고 있으며, 양친 중 1인이 한국 국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 학생 자격의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과대학의 학생들에게는 변호사 자격 및 고시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1999년에 외국인이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고, 정부는 또한 한국학생의 해외유학 연령제한을 폐지하였지만, 한국학생들은 한국내의 외국인학교에 취학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2002년부터 F2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거류자들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도록 공표한바 있으나, 이는 지방정부의 투표권은 가질 수 있지만, 피선거권은 가질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관례를 따른다면 피선거권 역시 당연히 주어져야 하며, 이 역시 한국정부가 외국인거류자들을 대우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에서 F2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거류자는 거류번호로 백화점 회원 카드 신청을 할 수 없고, 휴대폰 가입시에는 보증금을 지불하여야 하고, 인터넷상등 각종회원 구성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현행 5년에 한번 연기하는

韓國華僑的現況：為主經驗事例

夏德才

漢城華僑協會 總務局長

F2 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1만8천 旅韓華교들, 이에 대한 한국의 매체들은 우리 旅韓華교들 모두를 한국의 소수민족이라 보고 있으나, 잠시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의 입장인 우리 旅韓華교를 소수민족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旅韓華교는 단지 한국을 여행하는 여행객에 불과하며, 한국에 영원히 거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의 소수민족이라면 永住權과 永居權의 취득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근래 들어 정부는 국제화,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 상대는 모두 외국인입니다. 이에 우리 旅韓華교 역시 이전보다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의 생활여건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최근 대만정부가 취한 '외국인신청주권제도'와 중국내 조선족에 대한 중국정부의 각종 우대정책 등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이곳에서 말한 모든 것이 비록 여러분들에게는 무례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으나, 50년 동안의 旅韓華교들의 희망과 바람입니다. 이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향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非常感謝關心旅韓華僑的韓國政界、法界、學術界的人士們。

自1948年韓國解放以後，建立一個民主共和國，當時旅韓華僑也脫離了日本帝國主義政治的欺壓，嚮往的民主自由，旅韓華僑以第二故鄉在這裡落地生根，現在已經是第四代了。

但是在這期間，經學生革命、軍事革命，買一次新共和國的誕生旅韓華僑都隨政治上的排外壓迫。如同華僑的農耕地，政府強制拍賣，不動產住宅只限於200坪以內，店鋪只限50坪以內，四萬旅韓華僑現在只剩下2萬人大部分移民美國或回國定居，近年來，韓國大學的部分單科大學根本不准華僑學生入學，並且雙親有一位是韓籍就得不到以外國留學生入學的待遇，尤其是讀法科的學生，不准持有辯護士的執照及考試資格，政府在1999年承認外國人成立外國學敎，政府並開放韓國學生不受年限到海外留學，但是，不准內國人學生入國內的外國學敎就學，政府公布2002年持有F2的外僑給予參政權，但只准在地方政府有投票權而沒有被選權，按一般常例，亦應當給予被選權，以示對外僑的優渥待遇。

在韓持有F2外僑的居留號碼不能申請百貨公司的會員卡，申請手機電話時要保證金，在網際網路上亦無法加入各種會員組織，1萬8千旅韓

華僑的現行五年1次延期的F2居留權，常在媒體上看到我們旅韓華僑在韓國的少數民族，難道來韓觀光的外國人也稱為少數民族嗎？我們是旅韓華僑只不過旅居在貴國，而不是永居在貴國，假如是談到我們是貴國的少數民族的話，無形中就可以取得永住權和永居權了。近幾年來，政府推動國際化、世界化，相對的都外國人我們旅韓華僑也可以特點優厚的待遇，來改善我們的生活，並且也可以比較一下，近幾年臺灣推行外國人申請永居權的制度和中國境內的朝鮮族在大陸的優厚待遇。

本人在這裡所講的雖然冒犯了各位大家，但是這也是近50年旅韓華僑所盼望的期望，這也是貴國走向先進國第一步的里程碑。

<토론요지>

한화의 법적지위 개선으로 한중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열자

유재현
세민재단 이사장

필자가 민족문제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콜럼비아 대학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이었다. 도시계획 박사과정중에서 매우 흥미 있었던 과목은 “도시에서의 민족과 종족문제”였다. 멜팅팟 (Melting Pot) 이라고 불리우는 뉴욕에서 다민족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가를 연구하고 여러 민족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거주지들을 차례로 공부하러 다닌바 있다. 그때 느낀 일종의 문화적 충격으로 인해 필자는 상당히 “세계주의자”가 되었다. 말하자면 세계 모든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의 세계시민이 되고자 했다. 또 한편에서는 뉴욕과 뉴저지에 살고 있는 교포들을 만나면서 점차로 “민족주의자”가 되기 시작했다. 토요일에 열리는 한인학교에서 오래동안 교사를 하고 교포들이 운영하는 일간지에서 패타임 기자생활을 하면서 한민족들이 이민사회에서 겪는 애환을 같이 느껴왔다.

경실련을 만들고 학계를 떠나 상근하면서 우리가 매우 역점을 두었던 사업중의 하나가 “세계한민족청년대회”였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550만 우리동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직접 찾아다니며 보면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는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점차로 이른바 “열린 민족주의자”가 되기 시작했다. 이 것은 바로 양필승교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和而不同”과 같은 맥락이었다.

화교문제에 대한 필자의 관심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욕시 캐널스트리트 차이나타운에서부터 비롯했다. 그리고 세계주요도시에서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유명한 차이나타운들을 자주 돌아보았다. 그리고 동북아문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그중에서도 이른바 특히 “황화경제권”에 대한 관심 때문에 해외화상에 대한 많은 책을 읽기 시작했다. 동남아의 지배적인 세력이 된 화교들의 역사와 현재에 대해 나름대로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양필승 교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리고 차이나타운의 제안에 대해 이해하기 전까지 한국내에 있는 화교들에 대해서는 부끄러울 정도로 무지했다. 이제 겨우 몇 달밖에 안된 관심과 쥐꼬리만한 지식을 바탕으로 토론에 나온다는 게 매우 무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 이 자리에 왔다.

첫째, 한국은 외국인에 관한 한 단연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다. 앞서 비교적 장황하게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린 것은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한국처럼 배타적인 민족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서였다. 아직까지 1세기 전 구한말의 대원군 수준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임을 부끄럽게 여긴다.

둘째, 이러한 폐쇄성은 결국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약화시킬 것이다. 세계화시대 즉 글로벌리제이션의 가장 중요한 현상의 민족의 대이동이다. 더 이상 직장이 한 나라의 국경 안에 한정되지 않고 노동의 교류가 일어나면서 이제 역사상 최대규모로 인적이동이 일어난다. 특히 유럽연합처럼 사실상 국경이 없어지는 지역내 개방주의가 점차로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식의 폐쇄주의는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보여준 일부 기업인들의 야만성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였다.

셋째, 민족문제에 관한 한국인의 이중성을 반성해야 한다. 한국인의 세계진출은 적극 추진하면서 세계인의 한국진출은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한국의 이중성을 필자도 잘 몰랐다. 세계를 다니면서 한국인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여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한국내에 소수민족이 아예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이해를 못했다. 그나마 유일하게 남아있는 중국계 소수민족조차 조직적으로 도태시키는 정책을 시행해온 나라다. 전세계 어디에도 뿌리를 잘 내리는 강인한 중국민족들을 우리는 발도 못 붙이게 했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며 자부심을 느꼈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였다.

넷째, 대중화경제권과의 관계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IMF를 겪으면서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을 실시하고 투자유치를 하는 동안 중국계 자본이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은 이유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주된 이유중의 하나가 한국인이 그 동안 화교들에게 보여준 강한 배타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중국의 성장은 해외화교자본의 유치가 가장 큰 힘이 되었고 이제는 중국이 해외에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최대의 자본집단이 되고 있는 중국계 자본과의 결합 없이 한국경제의 장래가 과연 있을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섯째, 중국내 조선족 문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소수민족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정책을 우리의 소수민족 정책과 비교하면 천양지차가 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받아들여야 한다. 이 문제는 한국에 들어오는 조선족들의 법적지위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분명하게 중국국적을 가진 조선족들과 한족들이 한국내에

서 어떤 법적지위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도 한중 경제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거주해왔던 한화의 경우는 새롭게 사업차원에서 들어오는 중국인들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그것은 상당히 내국인과 비슷한 법적지위를 부여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차이나타운과 같은 실제적인 사업을 통해 법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중국계 자본을 유치하여 모던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려는 계획은 단순한 투자유치계획이 아니고 상당한 숫자의 중국인들이 장기 거주하며 사업을 하는 글자그대로 타운을 형성하는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한화의 법적 지위뿐만이 아니라 사업투자를 하거나 노동이민을 하는 중국인 또는 중국계 인사들의 법적 지위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고 매우 시급한 문제다. 한중교류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단계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한화의 법적 지위 문제는 가능한 한 획기적으로 전향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 한화의 문제는 만 여명이 겪는 민족적 차별에 대한 소극적 문제해결이 아니고 중화경제권과의 적극 결합을 통한 새로운 동북아시대를 열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討論要點>

改善韓華的法定地位，打開韓中關係的新世界

俞在賢
世民財團 理事長

筆者開始對民族問題感興趣，是在哥倫比亞大學的留學期間。攻讀城市規劃博士期間最使我感興趣的課程是“城市中的民族和種族問題”。因此曾在被譽為Melting Pot的紐約進行了多民族協調而公存的研究，挨個調查過各民族集居地。就因當時所感受的文化衝擊讓筆者成為了“世界主義者”，有了一個理想，成為世界各種民族共同生活的地球村的世界市民。而，在另一方面與居住在紐約和新澤西的僑胞交往中又漸漸成為了“民族主義者”。我曾在星期六開課的韓人學校有很長一段時間擔任了教師，又在僑胞主辦的報社當過臨時性記者，在此期間我感受到了韓民族在移民社會上的哀與樂。

離開學界，組織經實聯以後，“世界韓民族青年大會”成了我們的重點事業之一。親眼目睹散居在世界各國的550萬同胞的生活，感覺到封閉性，排外性的民族主義只帶來矛盾和分裂。從此我漸漸成為了所謂的“開放的民族主義者”，這與梁必承教授的“和而不同”論是一脈相承。

筆者關注華僑問題是從紐約的唐人街開始。此后，參加世界各地的國際會議時，經常去光顧當地的唐人街。還有，在關於東南亞問題的學術研究中對“黃華經濟圈”有了極為濃厚的興趣，所以開始大量閱讀了關於海外華商的書籍。開始有了對成為東南亞主力軍的華僑的歷史和現在了解。但是，認識梁必承教授之前，還有了解唐人街的提案之前，對韓國內華僑一無所知，感到很慚愧。僅僅幾個月的研究和微薄的見識來參加討論會是很不應該的，但是，還想有必要說清一下幾點，就下了決心參加了這次討論。

第一，在世界上對外國人，韓國可稱的是最封閉的國家之一。在上面講我個人經歷的目的在於證明在世界上沒有象韓國這樣排外的

民族。到目前為止，與一世紀之前舊韓末大院君時期並沒有多大變化，還是世界上最封閉的國家，感到十分慚愧。

第二，這樣的封閉性只能減低韓國國際上的地位。

世界化時代，即地球村的最重要的現象是民族的大移動。到時，工作單位不在會局限於一個國境之內，勞動的交流會引起曆史上最大規模的人的移動，尤其象歐聯體無國境的地域內開放主義開始普遍化，在這種情況韓國式的封閉主義可無立足之地。特別是一些企業對外國勞動者的野蠻性的行為將無地自容。

第三，須反省韓國人在民族問題方面的兩面性。

積極支持韓國人走向世界，卻制度上限制外國人走進韓國。對這種兩面性的作風筆者也不會了解。只關心韓國人努力提高經濟上，社會上的地位，從不了解韓國內根本不存在少數民族的真正含義的現實。韓國是執行政策組織性地淘汰唯一存在的中國界少數民族的國家。在世界上生命力極強的漢民族到韓國卻占不住腳的事一度使我們“感到高興，感到自豪”。

第四，急需改善與大眾化經濟圈的關係。

經歷IMF，施行外資留置政策和搞投資留置期間，中國界資金置只不理的理由要認真檢討。主要理由之一應該是過去韓國人對華僑的強烈排外性。中國的成長之中，海外華僑的資金成了最大的後盾，中國也在進行海外投資。不與世界最大資金集團的中國界資金的配合，韓國經濟能不能有將來是一個重大的問題。

第五，要考慮與中國的朝鮮族問題的平衡性。

中國對少數民族執行轉向政策，而與此相比我國的少數民族政策則不足一提。在條件允許的情況之下我們也該承受些。這問題與在韓朝鮮族的法定地位問題也有密切關係。在韓國現擁有中國國籍的朝鮮族和漢族，他們在韓國持何種法定地位在何種地方做工，也是韓中經濟交流中的重要課題。因此，從事業角度講對長期居住的韓華給予比新進的中國人更有利的地位。也就是說要給予國內市民差不多的法定地位。

第六，要通過建設中國村式的實際性問題來解決法定地位。

留置中國界資金建設現代中國村的計劃，不是單純的投資留置計劃，而是相當多的中國人長期居住并工作的所謂形成“村”的計劃。因此，在此過程中不只要考慮韓華的法定地位，而且對搞事業投資者，勞動移民，中國界人事的法定地位都要考慮。這個問題不宜推遲須急需解決。因為韓中交流已進入發展階段。

總的來說，對於韓華的法定地位問題，盡量要有大轉向性改革。解決韓華問題不只是解決萬余名的民族性歧視問題，而是與中華經濟圈積極配合，打開新的東北亞時代，這項問題應該成為國家政策認識上的重要課題。

국내화교들의 비자문제에 대한 제안

- 영주권제도 도입의 가능성

· 정태원 변호사/미 뉴욕 변호사
정태원, 정호연 합동법률사무소

· 안영도 변호사
필동합동법률사무소

· 한기종 교수/법학박사
상지대학교 법학과

1. 한국 화교의 현황과 문제점

최근 정부의 일련의 개혁조치로 인해 국내 화교의 권리가 대폭 신장되었지만,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F-2 비자는 추방 등의 문제로 그들의 신분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미 내국인과 다름없는 국내 화교들이 사회적·경제적으로 내국인과 상응한 지위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1) 체류자격:

- 출입국관리법 제 10조: (F-2)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자, 그의 배우자 및 출생자녀와 국민의 배우자[거주(F-2)자]가 가지고 있는 자의 출생자녀로서 미성년인 자와 국민의 처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실이 없는 자 및 거주(F-2)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처가 된 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한 자 외에 대한민국에 특별한 이유를 한 사실이 있거나 기타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여야 할 상당한 공헌을 한 사실이 있거나 기타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

(2) 체류조건: 매 5년 체류기간 연장 및 외국인 등록

(3) 외국인 등록

- 1) 대상: 장기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넘게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 2) 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등록을 한 외국인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 3) 외국인등록증반납: 등록외국인이 완전 출국하는 경우, 등록외국인이 국민으로 되거나 사망한 경우, 외국인 등록 비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 4)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로서 그의 체류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인
- 5) 체류자격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여권, 외국인 등록증, 원근무처고용주(대표자)의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등을 요구

(4) 출입국: 허가 받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 1) 단수(1회에 한하여 재입국): 1년 [화교 등 F-2 체류자격 소지자의 유학 또는 취업목적의 경우는 2년까지 가능]
- 2) 복수(2회 이상 재입국): 2년

(5) 재산권문제:

- 98년 7월 외국인 토지소유제한 조치 해제: 50평 이상의 상점, 200평 이상의 토지도 소유할 수 있게 됨

(6) 교육문제

- 99년 개정 “각종 학교에 관한 규칙”: 제 12조 규정에 의해 외국인 단체로 등록되어 있던 화교학교가 각종학교로 분류됨

2. 대안

(1) 전반적인 영주권 제도의 도입

-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 상당 시간을 요함
- 제도 개혁에 많은 시간을 요함
- 미국과 일본 사례 참조

(2) 화교들에 대한 특별 영주권 제도 도입

- 화교 특혜문제
- 외국인간의 위화감 조성 우려
- 외교적 문제 파생 가능성
- 일본 사례 참조

(3) F-2 비자의 조건부 무기한 연장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的 법무부 장관령만으로도 개정 가능
- 절차에 비해 효과 극대화
- 단시일내에 개선 가능
- 범법 사유등의 제한적 요건이 발생했을 경우 비자 자체의 무효화
- 제도적 신분보장으로서는 미흡
- 독일 사례

3. 참조 I : 일본 · 미국 · 대만의 현황

1) 일본

(1) 체류자격: 장기거주 외국인을 특별영주자(재일교포, 재일화교 등의 경우와 같이 “일本国과의 평화조약에 기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영주자), 영주자, 정주자로 구분

(2) 체류조건:

- 특별영주자, 영주자는 무기한
- 정주자의 경우는 법무대신이 정한 기간(3년, 1년, 6개월)

(3) 외국인 등록

- 1) 대상: 외국인 등록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외국인으로 되었을 때 또는 출생 기타 사유의 경우 60일 이내에 등록
-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등록을 한 외국인이 성명, 국적, 거주지, 직업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시 14일 이내
- 3) 외국인 등록증 반납: 등록 외국인이 완전 출국하는 경우, 등록외국인이 국민으로 되거나 사망한 경우, 외국인등록 비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 4) 체류지 변경 신고: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로서 그의 체류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인 (단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하여서는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5) 체류자격의 활동: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성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원체류자격활동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허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의 병과 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만엔이하의 벌금

(4) 출입국: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이루어지는 출입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효기간 3년의 복수

2) 미국

(1) 영주권자의 개념 및 권리

- 영주권자는 미국내에서 영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자로 미국시민이 아닌자를 칭함

- 영주권자는 미국내 주거를 영구히 유지하여야 하며 1년 이상 미국을 떠나 있는 경우는 영주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음

- 선거권

영주권자는 미국시민권자와는 달리 지방 및 연방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없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공동체나 학교이사회선거 참여를 허용

- 공무담임권

다수의 연방공무원직은 미국시민권자를 요구하며 다수의 주에서는 지방공무원중 경찰이나 소방관직에의 영주권자의 취임이 허용되지 아니함

개인기업이라도 그 영업이 미국정부의 계약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역시 고용이 금지됨

- 미국 시민권취득 자격

영주권 취득후 5년 경과시 미국시민권 취득신청자격을 부여

- 미국세법상 처우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세법상 자동적으로 미국거주자로 분류됨으로 영주권자가 취득한 미국내외의 모든 수입을 미국정부에 신고하여야 함

(2) 현행 영주권부여 제도

- 가족관련 영주권

- Immediate Relatives of US Citizens

- Family-Based Preference Group

- 기타: 입양아

- 고용관련 영주권

- 1순위: 과학, 예술, 교육, 경영 등에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자, 저명한 교수 및 연구직 종사자

- 2순위: 고학력소유자 및 과학, 예술, 경영 등에 특출한 능력소유자

- 3순위: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2년 이상의 훈련이나 경험을 가진 숙련공, 전문직 청소부, 식당근로자 등 비숙련공

- 4순위: 목사 등 성직자, 전도사, 반주자 등 종교관련 근로자, 미국정

부기관에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 5순위: 투자이민(100만달러 이상 투자, 10명이상 고용)
- 인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추첨영주권
- 망명자의 영주권
- 사면에 의한 영주권 부여

(3) 영주권 부여 불허자

- Unlawful Status Bar
- Likelyhood of Becoming a Public Charge
- The Co-Signer Rule
- Poverty Guideline
- Criminal Activity
- Political Activity
- Health Issues

(4) 영주권 박탈

- 중범죄를 범하여 강제퇴거 되는 경우
- 1년 이상 미국을 떠나 있는 경우로 영주의사 포기 간주

3) 대만

(1) 금년 개정한 “외국인거류이민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 永久居留證을 신청이 가능

- 7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 거주한 외국인
- 그 외국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5년 동안 계속 거주한 경우
- 그 외국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15년 이상 거주하는데, 그 중 8년이 매년 183일 초과한 경우

4. 참조Ⅱ : 독일에서의 외국인의 체류허가

송동수 법학박사
단국대 법대 강사

I. 머리말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적으로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한 국가이다. 이미 2차례의 세계대전의 돌발국가로서의 불명예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정이 상당히 많이 상존해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편으로 독일은 세계국가 중 정치적 망명권(비호권)을 헌법에 기본권으로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이기도 한데(독일 기본법 제16조) 이는 나찌의 무력통치하에 수많은 독일인들이 그 정치적 압박을 피해 외국으로 망명하고자 하였으나 각 국에 정치적 망명에 대한 기본권이 존재치 않아 이루지 못하였던 과거의 쓰라린 경험에서이다.

이처럼 독일은 외국인에 대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독일에서의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관한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국화교의 체류허가문제와 관련해 좋은 비교사례가 되리라 생각된다.

II. 독일의 외국인 실태

독일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교관, 유학생, 주둔군인, 단기체류사업자, 관광객 등 여러 종류의 외국인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소위 “외국인근로자(Gastarbeiter)”로 독일에 취업하였다가 잔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외국인근로자의 독일취업은 독일이 2차대전 패전 후 경제부흥을 일으키면서 1955년부터 1968년까지 도입한 제도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마샬플랜에 힘입어 엄청난 경제성장을로 인한 일자리창출과 노조가 활성화되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난 근로시간의 단축이 그 근본적 이유이다(독일의 1957년의 평균근로시간은 주 46시간이었으나 1967년에는 41시간으로 단축되었다). 독일정부는 값싼 외국인근로자의 독일취업을 위해 이태리(1955년), 스페인(1960년), 그리스(1960년), 터키(1961년), 모로코(1963년),

포루투칼(1964년), 튜네지아(1965), 유고슬라비아(1968년) 8개 국가와 협정을 체결하였으며(근로자모집협정: Anwerbervereinbarung), 1973년 오일파동 때 이 제도를 중단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독일취업으로 인해 1955년의 독일의 외국인수는 28만명에 불과하였던 것이 70년대에 들어와 약 300만명으로 급증하였으며 최근 90년대에는 약 6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독일 전체국민 8000만명의 약 9%). 600만명의 외국인 중 약 70%가 위의 8개 국가의 외국인이다(약 400만명)이며, 그 중 터키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III. 체류허가

외국인이 독일에 입국하고 체류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입국 및 체류허가에 대해서는 외국인법(Ausländergesetz: AuslG)에 규정되어 있다. 외국인법은 1990년 전면개정되어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외국인의 체류허가는 체류목적에 따라 다음 4가지로 분류된다(외국인법 제5조).

- * 일반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
- * 체류특권(Aufenthaltsberechtigung)
- * 목적형 체류허가(Aufenthaltsbewilligung)
- * 난민형 체류허가(Aufenthaltsbefugnis)

외국인에게 이 4가지 체류허가 중 어떤 종류의 체류허가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Ermessen)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적으로 해당 외국인의 체류목적에 따라 기속적으로 정해진다. 물론 독일에 단기적으로 머무르고자 하는 외국인(예컨대 여행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3개월까지 체류허가 없이 머무를 수 있다.

1. 일반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

이는 가장 일반적인 체류허가로서 체류목적과 연관성을 두지 않는 허가이다. 일반체류허가는 기간형과 무기한형으로 나뉘어진다.

1) 기간형 일반체류허가(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

일반체류허가는 보통 기한을 정하여 발급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연장이 계속 가능하다. 독일에 처음 입국하는 경우 대부분 사증(Visa) 발급 시 이러한 기간형 일반체류허가를 받는다(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2) 무기한형 일반체류허가(Un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

일반체류허가는 무기한으로 발급될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외국인법 제24조).

- ① 이미 5년 이상동안 일반체류허가를 받고 있을 것.
- ② 노동허가(Arbeitsberechtigung)를 받고 있을 것.
- ③ 독일어를 잘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을 것.
- ④ 자신과 가족을 위한 충분한 주거공간을 가지고 있을 것
- ⑤ 추방사유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

이러한 조건을 갖출 경우 해당 외국인은 체류허가를 무기한으로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만일 일자리가 없는 외국인이 무기한 일반체류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그와 가족의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무기한 일반체류허가는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장기체류를 보장케 하여 주고 그들로 하여금 독일에서 충분한 생활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로 귀화(Einbürgerung)하지 않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독일에 통화(Integration)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독일에 장기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일차적 단계로 부여하는 체류허가이다.

독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다수가 앞에서 언급한 8개국가와의 협정에 의해 모집하였던 외국인근로자의 잔류체류이기 때문에 그들의 체류기간은 이미 대부분 10년이 넘고 있는데, 그들이 발급받는 체류허가의 형태가 바로 이 무기한형 체류허가이다.

외국인이 한번 무기한 체류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는 기간형 체류허가로 소급하지 않는다.

2. 체류특권(Aufenthaltsberechtigung)

체류특권은 외국인이 독일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함에 있어 보장받을 수 있는 2차적이며 최고의 특권이다. 체류특권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외국인법 제27조).

- ① 이미 8년 이상동안 일반체류허가를 받고 있거나 이미 3년 이상동안 무기한형 일반체류허가를 받고 있을 것.
- ② 근로행위, 재산 또는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해 생활이 보장되어 있을 것.
- ③ 최소한 60개월 이상 국민연금비를 지불하고 있을 것.
- ④ 지난 3년 이내에 형벌(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것
- ⑤ 노동허가(Arbeitsberechtigung)를 받고 있을 것.

- ⑥ 독일어를 잘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을 것.
 - ⑦ 자신과 가족을 위한 충분한 주거공간을 가지고 있을 것
 - ⑧ 추방사유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 있을 경우 해당 외국인은 체류특권에 대한 법적 청구권을 갖게 된다. 무기한형 일반체류허가와 비교해 체류특권이 갖는 특징은 독일에서의 체류에 있어 공간적·기간적으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으며, 그 추방에 있어서도 아주 엄격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즉 관할 행정청(지자체의 외국인청: Ausländeramt)은 체류특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이나 부관(Auflagen)을 붙일 수 없으며, 체류특권을 받은 외국인은 공공질서에 반하는 아주 중대한 행위(예컨대 수년간의 징역형의 선고)를 하지 않는 한 독일에서 추방되지 않는다. 물론 정치적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무기한 체류허가와 동일하게 어떠한 보장도 받지 못한다(후술).

3. 목적형 체류허가(Aufenthaltsbewilligung)

3. 목적형 체류허가(Aufenthaltsbewilligung)
목적형 체류허가는 체류목적과 체류기간이 이미 독일에 입국할 당시부터 명백히 드러나 있고 확정되어 있는 경우 발급되는 허가이다(외국인법 제28조). 이는 대부분의 독일 체류 유학생들에게 발급되는 체류허가로서, 매년 증명서류(예컨대 매 학기 등록서류)를 첨부하여 체류목적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그 기간을 연장받으며, 체류목적이 종료된 경우(예컨대 졸업) 즉시 독일에서 출국하여야 한다.

4 난민형 체류허가(Aufenthaltsbefugnis)

국제법적, 인도적 또는 정치적 이유로 독일에 체류가 허가된 외국인들
에게 부여되는 체류허가이다(외국인법 제30조).

IV. 외국인의 정치적 권리

독일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는 귀화(Einbürgerung)를 하지 않는 한
그리고 자녀가 혈통으로 보자되지 않는다(체류특권을 갖은 경우에도 같

단) 따라서 외국인은

- * 연방과 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선거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며,
- * 정당설립 등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단계에서 외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단계에서 외국인이 정치적 권리의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1990년 Schleswig-Holstein주와 Hamburg주가 해당 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지방자치선거권을 부여하였던 것이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BVerfG)의 위헌판결을 받은 이후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 다만 1992년의 Maastricht EU조약에 의거해 EU국가의 국민들은 회원국에 거주지를 갖고 있을 경우 지방자치선거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조차 직접적인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외국인의 상황을 고려해 그 대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위 “외국인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다. 외국인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며 지방자치행정에서의 외국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V. 시사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중국화교와의 비교를 하여 볼 경우 우리가 도입 할 수 있는 제도는 독일의 무기한형 체류허가이다. 화교들의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볼 때 그들에게 체류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급격한 변화보다는 전진적인 변화를 선호하는 국민정서상 일 차적으로 무기한형 체류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특히 화교를 우리 사회로 동화시키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데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關於國內華僑的簽證問題的提案

- 導入永住權制度的可行性

鄭太源 律師/美國紐約律師
律師鄭太源·鄭護街 聯合法律事務所

安泳燾 律師
必洞聯合法律事務所

韓基宗教授/法學博士
尚志大學 法學科

1. 韓國華僑的現狀和問題

最近，由於政府採取一系列的改革措施，國內華僑的權益得到了大幅度提高，但是，每隔五年必須更換的F-2簽證造成驅逐等問題，使他們的身份仍然處於不安定狀態。因此，讓已經同國內人沒有區別的國內華僑在社會上，經濟上擁有享受同國內人相似的地位的權利，是必要的。

■ 停留資格

進出國管理法第十條：(F-2)連續居住在大韓民國，在國內有生活依據者，他的配偶，出生的子女和國民的配偶 [包括作為具有居住(F-2)資格者的出生子女而來成年者和作為國民的妻子而沒有大韓民國的國籍者以及成為具有居住(F-2)資格者的妻子的人而連續在國內停留一年以上者以外，認為具有對大韓民國作出特殊貢獻事實或者其它有相當的理由應當連續在國內停留者]。

■ 停留條件

每五年延長一次停留時間和進行外國人登記。

■ 外國人登記

- (1) 對象：獲得發給長期簽證入境的外國人，自入境之日起要在大韓民國停留九十天以上，必須自入境日起九十天之內進行登記。
- (2) 申請變更外國人登記事項：作了登記的外國人，對姓名，性別，出生年月日和國籍，護照(編號，發證日期和有效期限)事項要作變更時，必須在變更之日起十四天內進行。
- (3) 交還外國人登記證：登記的外國人完全出境，登記的外國人成為國民或者死亡，相當于成為不是外國人登記的對象。
- (4) 申請變更停留地點：已經結束外國人登記者，要想變更其停留地點的外國人。
- (5) 停留資格以外的活動：停留在大韓民國的外國人，在進行相當于其停留資格活動的同時，要想進行相當于其它停留資格的活動，

要求他提供護照，外國人登記證，原工作單位僱佣者(代表)的同意書(限於有關者).

■ 出入境

在獲得許可的停留期間內出境，要想再入境.

- (1) 單數(限於一次再入境)：一年(華僑等F-2停留資格所有者留學或者就業目的的情況，可以延至二年)
- (2) 複數(二次以上再入境)：二年

■ 財產權問題

1998年 7月撤銷限制外國人土地所有的措施：能夠擁有50坪以上的商店，200坪以上的土地.

■ 教育問題

1999年修改《關於各種學校的規章》：根據第12條規定，作為外國人團體登記的華僑學校，分別成為各種學校.

2. 對策

(1) 採用全面的永住權制度

- 形成國民同感需要相當的時間
- 制度改革需要很多時間
- 參考美國和日本的事例

(2) 對華僑採用特殊永住權制

- 華僑特惠問題
- 擔心形成外國人之間的危險感
- 可能產生外交問題
- 參考日本事例

(3) F-2簽証的帶有條件的無限期延長

- 用法務部長官令《出入境管理法施行規則》也可以修改
- 比程序更積極地關注效果
- 短時間內可以改善
- 當發生犯法思維等有限的重大案件時，簽証本身無效。
- 制度性保障身份不夠
- 參考德國事例

3. 參考 I : 日本，美國，台灣的現狀

■ 日本

(1) 停留資格

將長期居住的外國人區分為特殊永住者(如同旅日僑胞，旅日華僑等的情況，根據《通過同日本國的和平條約對脫離日本國籍者等關於出入境管理的特例法》規定而定的永住者)，永住者，定居者.

(2) 停留條件

- 特殊永住者，永住者無限期
- 定居者的情況定法務大臣規定的期限 (3年，1年，6個月)

(3) 外國人登記

- 對象：外國人登記是自入境之日起九十天以內或者成為外國人時，或者出生等其它原因，在六十天以內登記.
- 申請變更外國人登記事項：作了登記的外國人，在發生姓名，國籍，居住地，職業等事項變更時，在十四天以內進行.
- 交還外國人登記證：登記的外國人完全出境，登記的外國人成了國民或者已經死亡，相當于成為不是外國人登記的對象.
- 申請變更停留地點：結束外國人登記的人要想變更他們的停留地點的外國人(只有對拒絕進行指紋蓋章的外國人，可以根據出入境管理法的停留，問許可延長等不給予許可).

- 停留資格以外的活動：外國人在進行其相當于停留資格活動的同時，想要進行相當于其它停留資格的活動時，根據法務省全規定的程序，在不妨礙原停留資格活動的範圍內予以許可，在違反的情況下可以予以三年以下的徒刑監禁，或者三十萬日元以下的罰款，或者兩者並罰。
- 指紋蓋章：以居住一年以上的，十六歲以上的外國人為對象，如果違反，要予以一年以下的徒刑監禁，或者處以20萬日元以下的罰款。

(4) 出入境

對於停留期間滿日以前進行的出入境，原則上在有效期間三年恢復。

■ 美國

(1) 永住權者的概念和權利

- 永住權者是對不是美國市民的稱呼，是獲得許可可以在美國國內永住的人。
- 永住權者必須永遠地留居在美國國內居住，如果離開美國一年以上，就被認為是沒有永住的含義，就可以剝奪永住權。

(2) 選舉權

永住權者同美國市民權者不同，沒有參加地方和聯邦選舉的權利，但是在部份地區允許參加地區共同體或者學校理事會選舉。

(3) 公務擔任權

少許聯邦公務員職務要求由美國市民權者擔任，少許州不允許永住權者就任地方公務員中的警察或者消防隊官員的職務。即使是個人企業，在其營業根據同美國政府的合同進行時，也禁止其僱佣。

(4) 取得美國市民權的資格

取得永住權以後，經過五年，賦予申請取得美國市民權的資格。

(5) 美國稅法上待遇

美國永住權者在美國稅法上自動地列入美國居住者行列，永住權者取得的美國國內國外的一切收入必須向美國政府報上。

(6) 現行賦予永住權制度

- 關於家屬永住權

- Immediate Relatives of US Citizens
- Family-Based Preference Group
- 其它：入境養子

- 關於僱佣永住權

- 第一位：對科學・藝術・教育・經營等具有特殊能力的人，著名的教授和研究職務人員
- 第二位：高學歷所有者和對科學・藝術・經營等有突出能力所有者
- 第三位：學士學位所有者，或者具有二年以上訓練，經驗的熟練工，專職的清掃工，餐廳勞動者等非熟練工
- 第四位：牧師等神職者・傳教士・伴奏者等有關宗教活動者，在美國政府機關具有五年以上勞動資歷者
- 第五位：投資移民(投資100萬美元以上，僱佣10人以上)

- 旨在確保人種多樣化的抽籤永住權

- 流亡者的永住權
- 由於赦免而賦予永住權

(7) 不許賦予永住權者

- Unlawful Status Bar
- Likelihood of Becoming a Public Charge
- The Co-Signer Rule
- Poverty Guideline
- Criminal Activity
- Health Issues

(8) 剝奪永住權：

- 犯了嚴重犯罪，強行退居
- 離開美國一年以上，看作放棄永住意願

■ 台灣

根據今年修改的《外國人居留移民法》，下列情況可以申請永久居留證

- 連續七年以上，長期居住的外國人
- 該外國人的配偶和子女連續居住五年時間
- 該外國人的配偶和子女居住十五年以上，其中八年每年超過183天。

4. 參考Ⅱ：在德外國人滯留許可

宋東洙 法學博士
檀國大 法大 講師

I 引論

德國和韓國一樣，都是由單一民族造成，具有傳統的民族主義色彩的國家。不僅有著作為第二次世界大戰的發戰國得不好的名聲，而且現段階仍然於外國有著敵對的感情。

但是從另一面說德國作為從政治上把王權作為基本權寫入憲法來加以保護的國家(德國 基本法 第16條)，由此，雖然由於納粹的暴力統治，衆多的德國國民因受到政治的迫害兒亡命于外國，可是因為各種基本權的制約，以其他各國為目的地政治亡命曾經有過不能成功的經歷。象這樣，因為德國是對外國人有著兩面性的國家，我認為德國人對外國人得滯留期限的制度能夠成為現在我們國家正在討論的中國華僑滯留問題的比較參照。

II 在德國的外國人的現狀

在德國，雖然外交官，留學生，駐屯軍人，短期滯留生意人，旅客等外國人以各種形式可以滯留，可是具有社會普遍性的問題是佔有很大比重的外國人就是所謂“外國人勞動者”(Gastarbeiter)在外國工作而暫留的人。德國在第二次世界大戰的失敗後，隨著德國經濟復興的提出，制定了“外國人勤勞者”制度。雖然制定這一制度的動機可能有很多，可是，由於

mashallplan，引發的巨幅的經濟成長率所引起的崗位的增多和工會的成長致使的持續的工作時間的縮短是根本原因。(德國政府1857年的平均工作時間為每週46小時，而1967年縮短為41小時。)德國政府為了成就底價外國就業者的在德就業，與意大利(1955) 西班牙(1960) 希臘

(1960) 土耳其(1961) 摩洛哥(1963年) 葡萄牙(1964年) 突尼斯(1965)
 南斯拉夫(1968) 共8個國家締結協定,1973年 5月1日暴動的時候, 中斷
 了這一制度.由外國勞動力的就業引起,1955年德國的外國人就業者還
 不到28萬名,到70年代約劇增為300萬名.到了90年代,將近600萬名(德國
 的全國人口總數300萬名的9%). 600萬名的外國人中,約70%以上的十
 一上8個國家中的人(約400萬名),其中土耳其人最多.

III. 滯留許可

從原則上來說,外國人要進入德國駐留,必須要獲得許可. 之一如果機製
 劃許可的相關事項,在(外國人法)裡有詳細規定. 外國人法經過1990年
 的全面修訂,從1991年1月1日起施行,根據這項法令, 外國人的主六七現
 有滯留目的的不同分為一下4類:

- 一般滯留許可(Aufenthaltserlaubnis)
- 滯留特權(Aufenthaltsberechtigung)
- 目的型滯留許可(Aufenthaltsbewilligung)
- 難民型滯留許可(Aufenthaltsbefgnis)

對於外國人,這4項滯留許可中所歸屬於的滯留類型並不是取決
 於行政廳(Ermessen), 從根本上是取決於外國人是否有適當的滯留理
 由..當然, 在德國有短期滯留的外國人(例如旅行者),他們都是在不在德
 國勞動的前提下可以在沒有滯留許可的情況下滯留3個月.

1. 一般滯留許可 (Aufenthaltserlaubnis)

這是最一般的滯留方式一般滯留許可一般可分為限期型和無期
 限型滯留兩種.

1) 一般滯留許可,是依據不同的期限來發放簽証,沒有特別理由
 仍可 延長滯留的類型.第一次來德國的大部份是發給限期
 的簽証,取得 一般滯留許可.

2) 無期限型滯留許可(Brfrestete Aufenthaltserlaubnis)
 一般滯留許可也可以放無期限簽証,但必須符合一下條件,

- ① 已經獲得5年以上滯留許可的人,
- ② 取得勞動許可的人
- ③ 精通德語能在德工作
- ④ 自己或家族有著充份的居住空間,
- ⑤ 不是被逐放的人

在具有這樣條件的情況下德適當的外國人有無期限延長自己的滯留期
 限的法定權力. 如果在德國沒有工作的外國人想要在德謀求無期限滯
 留許可的話,他與他的家族經濟保障能力必須被證明.

無期限的一般滯留許可用于保證在德居住的外國人的長期滯留,通過這
 樣,在德國能夠獲得充份的生活能力的制度,沒得德國國籍的人如果取
 得德國國籍,變合理.

在德國滯留的外國人,大多數是上面所指出的根據8國協定募集的暫時
 拘留的外國勞動者.他們的滯留期限大部份超過10年,而他們所收取的
 滯留許可的情況便屬於這種無期限興致許可.

外國人如果一旦取得無期限滯留許可,那麼從原則上來說,一般不再發
 紿他限期型簽証.

2. 滯留特權(Aufenthaltsberechtigung)

滯留特權是外國人在德國長期滯留的最高特權.要想取得滯留特權必須
 符合一下條件(外國人法 地27條)

- ① 已經取得8年以上滯留許可,或已經取得3年以上無期限型一般滯留
 許可的人
- ② 通過在德工作, 財產或者其他方法,能夠使自己的生活得到保障.
- ③ 支付最少60個月以上的國民集資
- ④ 3年之內沒有受到刑法的人
- ⑤ 擁有勞動許可(Arbeitsberechtigung)
- ⑥ 精通德語
- ⑦ 自己或家族有著充份的巨住空間的人
- ⑧ 不是被正在逐放中

以上條件必須充足的外國人才擁有法定的滯留特權. 相對於無期限型
 滯留許可,在德國如果擁有滯留特權不管是在空間上還是在時間上都沒

有任何限制.即使被逐放也擁有著嚴格的保護. 卽, 管轄行政廳(自治的外國人廳)賦予滯留特權,再不附加條件和附加條款(Auflagen)的情況下,對取得滯留特權的並且觸犯了有關公共秩序方面的重大問題的情況下的外國人可以處一逐放.當然,在政治權利方面,無期限的滯留許可和與之統一的保障也將不能得到.(後文)

3. 目的型滯留許可

目的型滯留許可是在進入德國是明確的制定的滯留先後發給的許可.(外國人法 28條) 這是一種對大部份在德滯留的留學生發放的簽証,通過交付證明書(比如 每學期的入學手續)來證明滯留目的相關的行為,延長滯留時間, 滯留目的消失時(如畢業). 超過滯留期限即從德國使離境

4. 難民型滯留許可

通過國際法,人道主義,政治性的理由,經許可在德滯留的外國人給予的滯留許可.(外國人法 第30條)

IV 外國人的政治權利

對在德國滯留的外國人, 他們在德因為不取得德國籍而沒有政治權利在原則上不予以保障.(如 擁有滯留特權的人) 因此,

- 不擁有聯邦和州,第法團體的選舉權和被選舉權,
- 不能參加政黨組織的立的活動

在地方自自治團體, 對外國人能否獲得政治性活動的權利這一問題有過爭論. 但是, 1990年Mchleswig Holstein 州和HambuRG 居住的外國人, 曾經有過的參加的房子質詢俱全後,在聯邦憲法裁決所得違憲判決後, 已經不能再一次被實現和討論. 只是依據1992年的條約, EU 國家的公民在會員國擁有居住的在地方自治選舉中擁有選舉被選舉權.就連地方自治地區, 考慮到外國人不能直接行使政治權, 在對案中寫入成立外國人委員會這一條項.外國人委員會的委員, 對適當的管轄地

區的去居住的外國人直接選出,成為之一第許外國人的代言人.

V 結論

相對於我們國家居住的中國華僑,我們能夠引入的制度應為德國的無限期的滯留許可. 考慮到華僑在我國的社會性,經濟性地位,賦予他們居住的特權是妥當的, 我認為, 相對於顯著的變化,代表先進的變化的無期限滯留許可是很有希望的. 這正是看到華僑對我國的社會推動,安定的保持而想到的

<토론요지>

한국 화교의 법적 지위 개선은 한국사회를 위한 길

정 인 섭
서울대 법대 교수

한국에 수대째 살아온 화교가 보호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권은 무엇보다도 이 땅에 계속 살수 있는 권리이다. 이들의 형식적 국적은 한국인이 아니라도 주한 화교는 이제 우리의 이웃이요, 동포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된지 오래이다. 이들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중의 하나인 짜장면을 우리에게 알려 줌으로써 우리의 음식문화를 풍성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조차도 수대째 이웃으로 살아온 화교들이 이 땅에 거주하는 사실에서부터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주한 화교의 거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가 추진하여야 할 목표는 당연히 전반적 영주권 제도의 도입이 있어야 한다. 화교만을 위한 특별 영주권제도는 출신에 의한 차별을 야기하는 것으로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인권조약상의 비차별 조항과 충돌된다. 우리가 주한 화교에게 영주권 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로서 부여하자는 것이 아니며, 이들의 거주실태에 합당한 처우를 베풀자는 것뿐이다. 따라서 화교는 아니나, 화교만큼 이미 우리의 이웃이 된 다른 외국인이 있다면 이를 역시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만 한다.

우리 나라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계속하려면 현재의 인구구성으로는 이를 뒷받침하기 어려우며, 앞으로 우리 역시 외국 이민을 받아야만 성장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연구결과도 나온바 있다. 우리 사회 속의 이웃을 단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동등한 구성원으로 수용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국제화 시대를 살아갈 자격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친지들이 해외로 나가 살면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고 살 때 박수를 보내며, 그들이 코리안으로 성공할 때 같이 즐거워한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땅의 외국인이 자신들의 기본적 풍습과 언어를 유지하고 사는 것은 백안시하는가? 한국내에 차이나타운이 없는 것은 결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수치일뿐이다. 우리가 주한 화교의 법적지위를 개선시키는 것은 화교를 위한 시혜적 조치가 아니며, 결국 한국 사회 스스로를 위한 길일뿐이다.

<討論要點>

爲了韓國社會，改善韓國華僑的法定地位

鄭仁燮

漢城大學法大教授

保護世居在韓國的華僑的最基本的人權，是給予他們永居在此地的居住權。雖然形式上駐韓華僑的國籍不是韓國，但是，他們已經成爲了我們的鄰居，同胞，社會成員之一。比如，華僑給我們帶來了韓國人喜歡吃的炸醬面，豐富了我們的飲食文化。但是，大多韓國人都不知道，數代居住在韓國的華僑的痛苦。

爲改善駐韓華僑的居住狀況，我們積極推行的首要問題當然是制定完全永居權問題。而，只爲華僑的特別永居權問題，會帶來出身引起的種族差異，這與韓國加入的人權條約中的款項相矛盾。我們對駐韓華僑制定永居權制度，不是給某一集團賦予最惠待遇，而是，根據他們的居住狀況給予適當的待遇。因此，不僅僅是華僑，別的國家的外國人，也要享受同樣的待遇。

有個研究結果指出：我國現在的人口結構難以支撐經濟的長期發展，要接受外國移民，才能維持發展率。我們社會里的鄰居因不同國籍爲理由拒絕相待同等的成員，那麼我們沒有資格生活在國際化時代。我們看着居在海外的我們的親戚繼承韓國的語言和文化而鼓掌，他們以韓國人的名譽成功之時同享歡樂。那麼，爲什么看不慣在此地生活的外國人保持自己的風俗習慣和語言之事？韓國沒有中國村的事實絕對不是我們的榮譽，應感到羞恥。我們改善駐韓華僑的法定地位不是對華僑實施特惠政策，而是爲韓國社會自身發展所需的措施。

<토론효지>

한국 화교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제언

이인호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오늘의 주제에 대하여 토론자로 참석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사실 저는 화교를 포함한 주한 외국인의 법적 지위나 실태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화교에 대하여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어 있고, 특히 동남아에는 화교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하여 화교들의 경제력이 상당하다는 정도의 지식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토론회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그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주한 외국인의 지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그들의 인권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와 같은 사람이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되었고,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이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차이나타운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일부에는 작은 규모의 집단거주지나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미국이나 동남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규모로 화교들의 집단거주지나 경제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겠지만 우선 드는 생각은 반만년동안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한민족은 외국인에 대하여 배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현실이나 정부정책 속에서 외국인 집단이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준전시체제 속에서 내국인의 출입국도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으므로 외국인의 출입국의 경우에는 더욱 더 많은 제약이 가해졌을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안영도 변호사님의 발표문에도 1998년 7월에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 조치가 해제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이전까지는 토지소유를 비롯한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음을 알게 해 줍니다. 또한 교육문제도 1999년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에 의해 화교학교가 각종학교로 분류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는 화교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학력을 인정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출입국관리법은 국내에 계속 거주하여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주(F-2)'로 분류하여 5년마다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 등록을 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받은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단수허가(1회에 한하여 재입국), 복수 허가(2회 이상 재입국)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체류기간을 무기한으로 인정하는 영주권, 영주자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대만 등은 외국인의 영주권을 인정하고 있고, 영주자에게 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 등의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나라들과 비교하여 본다면 대한민국은 거주 외국인에 대하여 상당히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인 것입니다. 5년마다 체류기간 갱신허가를 받아야 하는 정주외국인의 불편과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정주 외국인의 영주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정책은 화교들에게만 그러한 것이 아니며,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것만도 아닙니다. 산업연수생을 비롯한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하는 문제라든가 해결해야 할 외국인 인권정책상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화의 시대에 외국인에 대한 이러한 편협한 정책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인권의 보편성의 원칙에 비추어도 우리의 외국인 정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토론회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한중일보’가 주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보가 이 토론회를 주최하는 것은 아주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였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민변’이 우리 나라(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인권의 신장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해 왔음은 잘 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군부통치를 종식시키고 민간정부가 들어선지도 벌써 10여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형식적 민주화, 정치적 민주화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지만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민변’도 이제 사회 각 분야의 실질적 민주화와 보편적 인권의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인권도 우리의 주된 관심사 중의 하나입니다. ‘민변’은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왔고, 최근에는 ‘난민’지위를 얻으려는 외국인 - 현행 출입국관리법상으로는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변은 난민지위문제에 관한 유엔 위원회-유엔난민고등판무관-로부터 대한민국에서의 난민지위인정을 위한 재판프로그램에 대한 파트너 자격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화교’와 같은 정주 외국인의 인권을 위한 활동은 민변으로서도 오늘의 토론회가 최초의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외국인인권에 대한 관심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변’과 같은 인권단체가 정주 외국인의 권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될 만큼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인권이 개념도 확대되고 있고, 활동 영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정주 외국인들의 인권과 권리를 찾고자 하는 ‘화교’ 여러분들에게도 ‘민변’은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한 후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서울중국학중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한국 화교들의 역사와 현재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등 평소에 알지 못하던 화교들의 문제에 대하여 많은 점을 배울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인권단체들도 외국인의 실태와 인권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권은 보편적인 것이며,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인권 향상을 위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높여 나가기를 바랍니다.

爲民族社會的律師集會

李仁浩
律師

其實接受今天參加討論會的邀請當時我對包括華僑的駐韓外國人的法定地位及實際情況不太了解。對華僑也只知道世界各國几乎都有中國村，特別在東南亞華僑的經濟勢力相當厲害而已。但是，本人接受邀請的目的在於大部分人們象我似的不知道駐韓外國人的地位，對他們的人權也漠不關心，所以認爲我是大韓民國的普通公民，象我這種角度參加討論會也會有意義的想法。

居我了解大韓民國沒有中國村。不知一些地方有沒有小規模的集體居住地或商街，但象美國及東南亞的大規模華僑集體居住地或經濟圈是沒有形成。關於此理由可在各種角度分析，但我首先認爲近半萬年時間以單一民族生活的我們韓民族對外國人有排外的感情，此排外性在現實生活或政府政策上不容許外國人集團形成一定勢力。另外，韓國戰爭以後至戰時體制韓國人出入境也受到相當的限制，所以對外國人出入境的問題上可能有過更多限制。

安永道律師發表的文章里指出我國在1998年7月取消關於外國人所有土地的限制措施，從此可知道那之前包括土地所有的經濟活動方面有很多限制。還有，教育問題上，華僑學校通過1999年發出的'關於各種學校規則'成爲'各種'學校，在此之前畢業華僑學校不承認學曆。本人爲參加討論會作準備時全面查過關於滯留資格及滯留期間規定的出入管理法。我們出入境管理法規定，關於在國內繼續居住而有生活條件的外國人給予'居住(F-2)'簽證，他們要每5年延一次簽證，需要辦理外國人登錄。簽證有效期間出入境的話，發一次性許可(限一回再入國)和多次性許可(二回以上再入國)。反正大韓民國不承認無期限的永住權和永住者的概念。美國，日本，台灣等國家承認外國人的永住權，聽說有給永住者給予選舉權或一部分公務擔任權的前例。

與這些國家相比，大韓民國很大限制常住外國人的權利。每5年要延簽證的常住外國人感到的麻煩和不踏實的心情會無法一一講出。本人認爲出入境管理法以承認常住外國人的永住權的方向而改定。

大韓民國的排外性政策不是專對華僑執行，也不是只對國內有生活條件的外國人執行。擔保產業培訓人員爲主的其他勞動者的基本權利問題等有很多關於外國人人權政策上該解決的問題。在世界化時代，這種關於外國人的狹隘性政策對國家的發展也不利，與人權的普遍性原則相論也應該重新檢討。

另外，居我所知今天的討論會是由'爲民族社會的律師集會'和'韓中日報'共同主辦的。韓中日報主辦討論會是應該的。但是，'爲民族社會的律師集會'共同主辦討論會具有很大意義。大家都知道'民律'在我國(大韓民國)的民族化和人權的發展過程所做的功勞。在大韓民國結束軍部統治後登場的民間政府已有十幾年的曆史。形式上的民族化，政治上的民族化有缺陷，但取得了很大發展。'民律'也在社會各部門爲實現實際性民族化和普遍性人權的目標而展開各項活動。外國人的人權也是我們的主要活動內容之一。'民律'曾經爲保證外國勞動者的基本人權而展開活動。最近又支持要得到'難民'地位的外國人-現行出入境管理法上定的非法滯留者。民律關於難民地位問題從聯合國委員會-聯合國難民高等判務官-得到在大韓民國爲承認難民地位的有關裁判程序合作方的資格。

關於'華僑'等常住外國人的人權問題舉行的今天的討論會，對民律來講是一個開端。對外國人人權問題引起重視的好機會。常住外國人的權利問題，讓'民律'等人權團體引起重視，在我們大韓民國擴大人權的概念，也擴散活動領域。要尋找常住外國人的人權和權利的各位'華僑'，'民律'會成爲你們的好伙伴。

本人決定參加討論會以後，打開主管討論會的漢城中國學中心的網頁，所了解住韓國的華僑的曆史和現在重要爭點等平時不知道的很多問題。如果沒有了解，就不能理解。深深地感到韓國的人權團體應該對外國人的實際情況和人權引起重視。人權是普遍性的，不能分爲內國人和外國人。爲了提高人權，希望相互理解和協助爲盼。

<부록> 화교의 법적지위

1.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가. 출입국 관리법 제 10조

① 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한다.

나. 체류자격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 12조, 대통령령)

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27 F-2 비자)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자, 그의 배우자 및 출생 자녀와 국민의 배우자

{거주(F-2)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출생자녀로서 미성년인 자와 국민의 처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실이 없는 자 및 거주(F-2)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처가 된 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한 자 외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실이 있거나 기타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

다.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2, 법무부령)

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

류기간의 상한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 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체류조건 : 매 5년 체류기간 연장 및 외국인 등록

2. 외국인 등록

가. 대상

장기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넘게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법 31조, 시행령 40조 - 47조)

나.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등록을 한 외국인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법 35조, 시행령 44조)

다. 외국인등록증 반납

등록외국인이 완전 출국하는 경우, 등록외국인이 국민으로 되거나 사망한 경우, 외국인 등록 비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법 37조, 시행령 46조)

라.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로서 그의 체류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인. (법 36조, 시행령 45조)

마. 체류자격의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 원근무처 고용주(대표자)의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등을 요구.

(법 20조, 시행령 25조)

3. 출입국

허가 받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1) 단수(1회에 한하여 재입국) : 1년

[회교 등 F-2 체류자격 소지자의 유학 또는 취업목적의 경우는 2년 까지 가능]

2) 복수(2회 이상 재입국) : 2년

(법 제30조, 동 시행령 제38,39조)

4. 재산권 문제

1998년 6월26시행된 법률 제5544호 외국인 토지법부터 외국인 토지소유제한 조치 해제 : 50평 이상의 상점, 200평 이상의 토지도 신고만으로 소유 할 수 있게 됨.

구법(외국인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동 시행령 제3조, 제6조

규정에 의하면 50평 이상의 상점, 200평 이상의 토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하였음.

5. 교육문제

종전에 외국인 단체로 등록되어 있던 화교학교가 1999년 개정 “각종 학교에 관한 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해 각종 학교로 분류됨 (초·중등교육법 참조)

6. 체류기간의 연장 (출입국 관리법 제25조, 동시행령 31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7. 강제퇴거 및 이의신청절차 (출입국관리법 제46조, 58조/64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자는 강제퇴거 대상임

사례 : 대법원 1972.3.20 선고 71누320 판결의 경우

<附錄> 華僑的法律地位

1. 停留資格和停留期

甲、出入境管理法第十條

- 1) 作為外國人想要入境者，必須具有總統令規定的停留資格。
- 2) 能夠賦予第一款的各停留資格者停留期的上限，由法務部規定。

乙、停留資格 (出入境管理法施行令第十二條，總統令)

根據本法第十條第一款的規定，外國人的停留資格見另表一。
另表一的27 F-2簽証)

連續居住在大韓民國，在國內有生活依據者；包括他的配偶及其出生子女，作為具有國民的配偶居住 (F-2) 資格者的出生子女而未成年者，作為國民的妻子而沒有大韓民國的國籍者，作為具有居住(F-2)資格者的妻子已經連續在國內停留一年以上，此外，包括對大韓民國作出過特殊貢獻者，或者認為有其它必須連續停留在國內的相當理由的人。

丙、賦予第一款的各停留資格者停留期的上限 (出入境管理法施行規則第十八條之二，法務部令)

根據本法第十條第二款的規定，能夠賦予第一款的各停留資格者停留期的上限，見另表一。僅僅當法務部長官鑒于國際慣例，或者相互對等的原則，或者根據國家利益，認為有必要時，可以另行規定其上限。

丁、停留條件：每隔五年延續一次停留期和進行一次外國人登記。

2. 外國人登記

甲、對象

獲得發給長期簽證入境的外國人，在自入境之日起要在大韓民國停留超過九十天的情況下，應當自入境日起九十天之內進行登記。(本法第三十一條，施行令第四十條～四十七條)

乙、變更外國人登記事項的申報

進行了登記的外國人，對姓名、性別、出生年月日以及國籍、護照(編號、發證日期及有效期)等事項有變更時，應當自變更日起在十四天之內進行申報。(本法第三十五條，施行令第四十四條)

丙、交還外國人登記證

登記的外國人完全出境，登記的外國人已經成為國民或者死亡，出現相當于不是外國人登記對象的情況。(本法第三十七條，施行令第四十六條)

丁、變更停留地點的申報

作為結束外國人登記者想要變更他的停留地點的外國人。(本法第三十六條，施行令第四十五條)

戊、停留資格以外的活動

停留在大韓民國的外國人，想要在進行其停留資格活動的同時，進行相當于其它停留資格的活動時，要求提供護照、外國人登記證、原工作單位僱佣主(代表者)的同意書(限於相應者)等。(本法第二十條，施行令第二十五條)

3. 進出境

在獲得許可的停留期內出境後，想要再入境。

(1) 單數(限於一次再入境)：一年

(華僑等持有F-2停留資格者進行留學或者為了就業目的，可以截至二年)

(2) 複數(二次以上再入境)：二年(本法第三十條，施行令第三十八、三十九條)

4. 財產權問題

1998年6月26日實施的法律第5544號，撤銷了外國人土地法中限制外國人擁有土地的措施，只要進行申報就可以擁有五十坪以上的商店、二百坪以上的土地。

按照舊法(關於外國人獲得和管理土地的法律)第六條、該施行令第三條、第六條規定，當購入五十坪以上的商店、二百坪以上的土地時，要獲得建設部長官許可才可能。

5. 教育問題

過去作為外國人團體登記的華僑學校，根據1999年修改的《關於各種學校的規章》第十二條規定，分流為各種學校。(參照初、中等教育法)

6. 停留期的延長(出入境管理法第25條，施行令第31條)

當外國人想要超過停留期繼續停留時，必須照總統令的規定，在其期滿以前獲得法務部長官關於延長停留期的許可。

7. 強行遷居和異議申請程序(出入境管理法第46, 58, 64條)

被宣判受到監禁以上刑罰後釋放者，是強行遷居的對象。

例如：大法院1972年3月20日宣告71累(nu) 320判決。